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릴레이 포럼

랜덤채팅 앱과 청소년 보호방안

2019.11.28(목) 14시 -17시
하이서울유스호텔 다이아몬드 홀

여성가족부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KYWA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Korea Youth Work Agency
십대여성인권센터 Stand Up Against Sex-Trafficking of Minors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릴레이 포럼

랜덤채팅 앱과 청소년 보호방안

2019.11.28.(목) 14시-17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다이아몬드홀

여성가족부 탁틴내일 KYWA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십대여성인권센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9 청소년 정책 릴레이 포럼]

랜덤채팅 앱과 청소년 보호방안

1. 개요

□ 일시: 2019.11.28.(목) 14:00-17:00

□ 장소: 하이서울유스호스텔 B1 다이아몬드홀

□ 공동주최: 여성가족부, (사)탁틴내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십대여성인권센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 프로그램

13:30~14:00	· 접수 및 등록
14:00~14:10	· 개회 및 인사말
	사회_이 수 정(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발 제	
14:10~15:10	1. 랜덤채팅 앱 청소년 성매매 실태 및 현황 _**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2. 채팅 앱 특성과 유통실태 및 청소년 보호 가이드 라인 _**조진석**(탁틴내일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부장) 3. 사적채팅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국가별 대응 _**Thomas Muller**(ECPAT International Deputy Executive)
15:10~15:30	휴식 및 다과
토 론	
15:30~16:30	1.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본 채팅 앱 _박소명(경인교육대학교 교사-교대생 전문적 학습공동체 G.L.S 회장) 2. 심의시스템을 활용한 채팅 앱 유해성 관리 _김준교(방송동신심의위원회 청소년보호팀 차장)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채팅 앱의 법률적 검토 _김수연(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점단 변호사) 4.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인인증 필요성 _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30~17:00	종합토론 및 폐회

CONTENTS

2019 청소년 정책 릴레이 포럼
랜덤채팅 앱과 청소년 보호방안

축사	1. 남인순 국회의원	9
	2. 표창원 국회의원	12
	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기순 이사장	13
발제	1. 랜덤채팅 앱 청소년 성매매 실태 및 현황 _**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15
	2. 채팅 앱 특성과 유통실태 및 청소년 보호 가이드 라인 _**조진석**(탁틴내일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부장)	75
	3. 사적채팅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국가별 대응 _**Thomas Muller**(ECPAT International Deputy Executive)	93
토론	1.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본 채팅 앱 _박소명(교사-교대생 전문적 학습공동체 G.L.S 회장)	109
	2. 심의시스템을 활용한 채팅 앱 유해성 관리 _김준교(방송동신심의위원회 청소년보호팀 차장)	119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채팅 앱의 법률적 검토 _김수연(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점단 변호사)	123
	4.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인인증 필요성 _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29

축 사

2019 청소년 정책 릴레이 포럼
『랜덤채팅 앱과 청소년 보호 방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서울송파병)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울송파병 국회의원 남인순입니다.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소설(小雪)'이 지나 본격적으로 한파가 시작되는 가운데, 탁틴내일과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십대여성인권센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공동주최로 열리는 "2019 청소년 정책 릴레이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는 '그루밍 범죄화와 성적동의연령 기준 재정립', 두 번째 주재는 '랜덤채팅 앱과 청소년 보호 방안'입니다.

지난 10월 16일, 미국 법무부 경찰청의 '아동성착취 영상 사이트'에 대한 국제수사공조 발표 결과, 검거된 310명의 이용자 중 한국인이 223명이었습니다. 이 사이트의 운영자는 23세 한국 남성이고, 사이트 운영을 통해 4억여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32개국에서 검거된 이용자의 70%가 한국인이라는 것은 한국사회가 아동 성착취에 대해 안일하다는 것을 방증하며, 이러한 인식과 문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범죄는 거의 모든 온라인 매체(스마트폰 채팅 어

플, SNS 기반 어플, 오픈채팅, 인터넷 개인방송 등)들이 성착취 범죄자들에 의해 총체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는 그루밍 피해, 성폭력 피해, 성매매 피해가 중첩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 단체 및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사이버 성매매 환경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처벌 할 수 있는 관련 법령과 전담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채팅앱, 인터넷카페 등 온라인플랫폼을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해야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 말 발의된 김상희·정춘숙 의원의 개정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권유·유인·강요·알선하는 정보 관리를 의무화하고, 발견 시 수사기관에 사실을 신고하는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인데, 국회 계류 중입니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아동음란물 확산 방지 의무를 부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통신 비밀을 침해하고, 표현 및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당시 재판부 판단으로 위헌제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아동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폐해가 심각하다" 며 합헌 결정했습니다.

이렇듯 채팅앱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성범죄 예방에 의무가 있다는 것이 확인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도 여러 의견들을 잘 조율하여 관련법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이 뿐만 아니라 현재 자발/강제를 통해 피해아동·청소년을 구별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성인의 책임 강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여(2016. 8. 8.)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18. 2. 21.) 「아동·청소년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주요한 원인이 가정해체 등에서 비롯된 빈곤이 주요한 원인이라는 점에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우리 사회의 피해자로 인정하고, 반복적·직업적 성매매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전문·특화된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

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가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된 이 개정안은 통과가 난망한 상황입니다.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을 삭제하자는 요구는 10년 넘게 이어져왔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평균 나이는 14.87세[1]며, 아이들 10명 중 7명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유입되고 있습니다.[2]

가정폭력·학교폭력 등 다층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을 상대로 어른들이 거액의 돈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며 집요하게 성매매의 덫을 놓고 있지만, 현행법은 덫에 걸린 아이들을 보호해주기는 커녕, 사실상 형사처벌에 준하는 「소년법」 상 보호처분을 부과해 실제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적발된 청소년 성매매 사범이 1,101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매수범 최종심 선고형을 살펴보면 집행유예 64.7%, 벌금 24.9%이고, 징역형 10.4%[3]에 불과합니다. 익명 플랫폼에 숨은 가해자들은 특정하기조차 어려워 이 통계 또한 빙산의 일각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법적 책임과 잣대를 돌려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주신 이수정 경기대학교범죄심리학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시는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님, 조진석 탁틴내일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부장님, Thomas Muller ECPAT International Deputy Executive과 토론을 맡아주신 박소명 교사님, 김준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보호팀 차장님, 김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전담 변호사님,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어른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국가는 각종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2) 여성가족부(2016), 성매매 실태조사
3) 여성가족부(2016)

축 사

2019 청소년 정책 릴레이 포럼
『랜덤채팅 앱과 청소년 보호 방안』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시丁 국회의원 표창원입니다.
아동 ·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먼저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아동 •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해 헌신해 오신 탁틴내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발제자, 토론자 등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IT 시장이 급성장하고, 통신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착취해 제작하는 음란물의 배포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으며 성을 착취하는 방식은 점점 음성화되어가는 추세입니다.

미성년자를 성의 도구로 착취하는 행위는 사회가 의지를 품고 각종 제도를 마련하여 근절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과제입니다.
성착취의 대상이 되는 아동 •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이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전 생애에 걸쳐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하는 만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게 이뤄져야합니다.

하지만 논란이 되었던 ‘다크넷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징역형이 10명 중 3명 (33.7%)에 그치는 등 그 수위가 매우 미약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한 법-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수 있도록 참석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아동·청소년들이 어떠한 착취 및 위협 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2019 청소년 정책 릴레이 포럼
『랜덤채팅 앱과 청소년 보호 방안』

이기순(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이기순입니다.

〈2019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릴레이 포럼에 참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포럼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시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보화 시대 눈부신 성과의 이면에 가려졌던 기술 발전의 그늘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우리사회가 직면한 기술 발전의 역기능이 심각한 이때, '랜덤채팅앱과 청소년 보호방안'을 주제로 여러 정부단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모여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랜덤채팅은 성매매의 온상지로 불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2016년 이루어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 중 74.8%는 채팅관련 앱을 이용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매매 조장 앱'으로 분류되는 것 중 87.7%가 인증이 필요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청소년의 유입을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한 목적의 랜덤채팅이 청소년들에게 성착취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법적·제도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종합보호대책을 발표하면서 랜덤채팅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주요 어플리케이션 유통 3사와도 건강한 매체 환경 조성의 공동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랜덤채팅앱과 청소년 보호방안을 위한 포럼에서 정부단체 및 시민단체의 역할과 법률적 검토 및 유해성 관리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청소년은 현재 정보화 시대의 수혜자이자, 미래에는 사회변화의 주체적 선도자가 될 주인공입니다. 이번 포럼이 지식정보화 시대 청소년의 위기 극복과 청소년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환경이 조성되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도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관계자 분들과 귀한 시간을 내어 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특별히 중요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먼 곳에서 와주신 발제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 릴레이 포럼

발 제 1

랜덤채팅 앱
청소년 성매매 실태 및 현황

조 진 경(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 및 현황[1)2)]

조진경 대표(십대여성인권센터)

1. 들어가며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또래상담사업팀에서는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사이버상에서 성매매 정황이 보이는 채팅 사이트, 스마트폰 채팅 어플, SNS, 인터넷 개인방송 등에 개입하여 성착취 피해 조기예방, 성구매자와 알선·조장 세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경고와 신고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사이버상 성착취 매개(플랫폼)의 변화추이를 지켜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사이버상 벌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문제는 결코 아동·청소년이 일으키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IT 기술과 결합된 상업적 성착취가 아동·청소년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2. 사이버상 성착취 매개(플랫폼)의 변화추이

1) 2013년도부터 2014년도 초반

사이버또래상담사업이 시작되면서 2013년도까지는 대부분 채팅·커뮤니티 사이트(세이클럽, 하늘사랑, 토크온, 플레이메이트, 네이버카페 등)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2014년도 초부터 채팅 사이트들이 유료로 전환하기 시작하였고, 유료화와 실명인증은 동시에 진행되는 체계이므로 온라인 사이트들에서 십대 아동·청소년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본 센터는 가출은

---

1) 이글은 2019. 4. 24.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개최한 「2019년 1차 성매매방지 정책 토론회: 채팅앱 매개 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정책적 대안」에서 발제자가 발표한 "사이버상 변화 추이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 겨냥 상업적 성착취 실태"와 2019. 7. 13. 열린 「2019년 한국젠더법학회·여성가족부 공동학술세미나: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실태와 법적 과제」에서 발표한 토론문 등을 오늘의 주제에 맞추어 재인용한 부분이 있음을 밝힌다.

2) 이글은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또래상담팀의 활동(팀장: 성혜정 상담원 외 8명 활동 중임)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특히 김민정, 김보람 상담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음을 밝히고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지속되고 있으며,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성착취에 유인될 수 밖에 없는 십대 아동·청소년들이 유료화가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당연히 퇴출될 수밖에 없으며, 반드시 다른 경로로 이동할 것이라 예측하고 그 이동경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동경로를 추적한 결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대거 이동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사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한 성착취 제안: 제3자가 대화 내용을 볼 수 있음.

2) 2014년도부터 2019년도 초반

(1) 2014년도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이동

스마트폰 채팅 어플은 구글스토어나 앱스토어를 통해 누구든지 손쉽게 다운받아 완벽하게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채팅 당사자들만의 은밀한 대화가 가능하며, 동시에 대화 도중 한 쪽이 퇴장하면 두 사람사이의 대화 내용

이 모두 삭제되는 등 성매수 제안에 최적화된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 스마트폰 채팅 어플 '즐톡' 화면 구성 (2013년 12월 12일 작성)

<table>
<tr><td>즐톡-첫 화면</td><td>즐톡-프로필 설정페이지</td><td>즐톡-나이 설정화면
※14세부터 선택하게 돼있음</td></tr>
<tr><td>
</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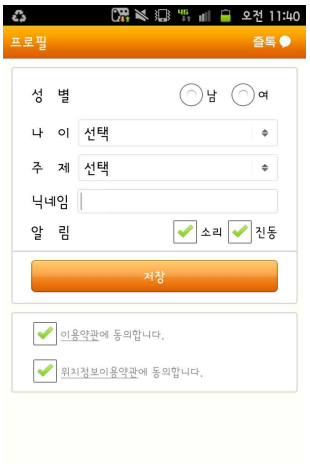
</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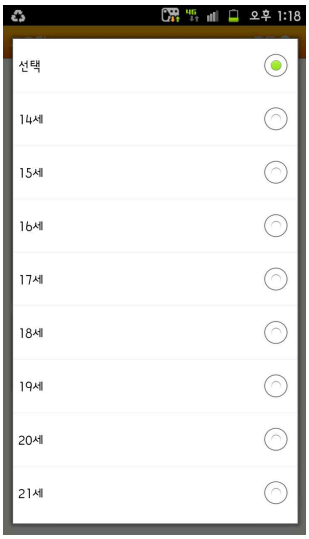
</td></tr>
<tr><td>즐톡- 지역 설정화면</td><td>즐톡- 대화방 세부메뉴(1)</td><td>즐톡- 대화방 세부메뉴(2)</td></tr>
<tr><td>
</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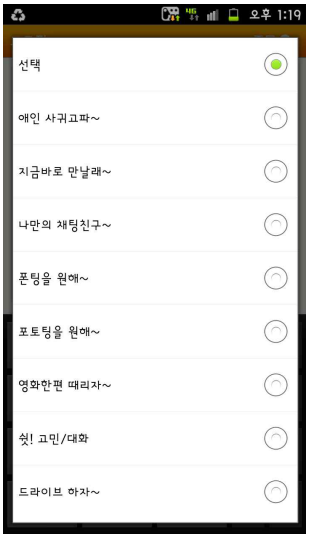
</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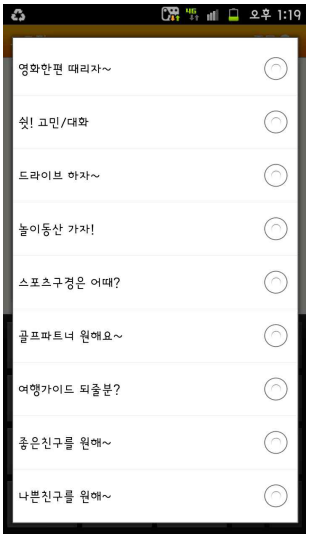
</td></tr>
</table>

(2) 2014년 8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십대여성인권센터, 즐톡 관계자가 만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에 대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

즐톡 관계자는 '한국정부의 대응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다만 구글 본사의 대응이 가장 걱정된다. 구글 본사에서 일정한 조건이 되면(예. 1일 접속 인수가 100만 명 이상일 경우 등) 자동적으로 콘텐츠를 검색하여 그 비율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데, 즐톡이 이제 거의 조건에 가까워지고 있고, 1등급이 되면 실명인증을 도입해야 하는 게 가장 걱정된다'는 말을 하였다.

(3) 이후 스마트폰 채팅 어플의 변화: "상업적 성착취는 십대 아동청소년을 겨냥한다."

① 2014년 하반기 사이버또래상담사업팀에서 즐톡과 똑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여러 스마트폰 채팅 어플이 새롭게 생성됨을 발견: 즐톡, 앙톡, 영톡, 심톡, 톡앤(? 확실치 않음). 소위 5대 톡이라 하였으며, 같은 운영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구글 본사의 실명인증절차 도입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이해하고 있다.

즐톡	심톡	앙톡

영톡	톡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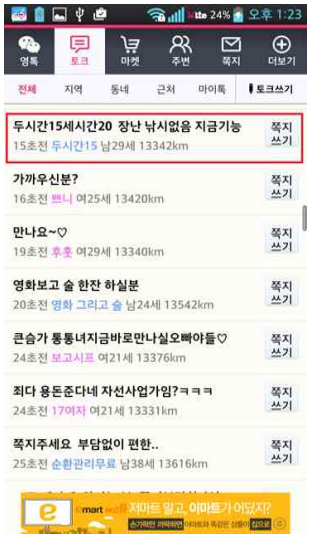	

② 2015년 4월 '관악구 만14세 소녀 살해사건'의 매개로 사용된 즐톡이 사건 발생 후 바로 실명인증 도입하였다. 그러나 3개월 후 바로 실명인증절차를 폐기하고 20세부터 체크하고 들어가는 형태로 바꾸었다.

즐톡-첫 화면	즐톡-프로필 설정페이지 ※나이는 20세부터 체크하게 되어 있지만, 닉네임 19고딩으로 들어감.	즐톡-나이 설정화면 ※20세부터 선택하게 돼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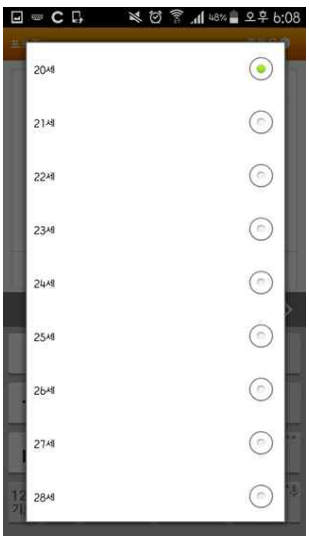

〈즐톡은 실명인증을 도입한 후 왜 3개월 만에 실명인증을 폐기했을까?〉

만14세가 즐톡을 통해 성매매 되고 있음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피해보겠다는 의도로 실명인증을 도입하였으나, 3개월 만에 실명인증을 폐기한 이유로 가장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점은 이윤의 축소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보통 스마트폰 채팅 어플의 수입은 쪽지 수입과 광고수입인데, 쪽지는 보내는 사람이 30-90포인트를 사용해서 보내게 되어 있고, 광고수입은 한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6시간이상을 머무는 인구의 수에 비례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아동·청소년이 많을수록 성매수자나 알선업자들이 많고, 또한 6시간 이상 머물 수 있는 세대가 십대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측해 본다. 이를 통해 볼 때 스마트폰 채팅 어플의 운영자들은 본인들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이 십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으며, 나아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십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었다.[3)]

③ 2015년 하반기에는 즐톡이 화면 캡쳐 기능을 기술적으로 막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많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들이 화면 캡처 기능을 기술적으로 막았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이를 성매수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추측하였다.

④ 2016. 10.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성매매처벌법위반,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앙스, 앙톡, 친구만들기, 심톡G, 톡앤, 영톡, 즐톡S를 고소·고발하였으나 2018년 11월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까지 모두 기각되었다. 이는 성매수자들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이 얼마나 안전한 성매매 알선 장소인지에 대해 확신시켜준 것이다.

---

3) 이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17일자 세계일보 기사를 통해 밝혀졌다.
전략.. '그들'이 이런 실태를 알고도 눈감는 이유는 결국 상업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성매매가 일어나는 걸 알면서도 왜 사업을 계속하냐'는 취재팀의 질문에 A씨는 "돈 때문"이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랜덤채팅은 사업"이라며 "성매매 가능성이 없으면 남성들이 왜 채팅앱에 들어와 현금결제를 하겠냐"고 오히려 되물었다. 업계에서 본인인증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후략
http://www.segye.com/newsView/20181217002812?OutUrl=naver

날 짜	경 과	세부내용
2016년 10월 11일	기자회견 및 고소고발장 제출	· 기자회견(한국YWCA연합회 강당) 고소고발 취지 및 고소고발장 내용, 향후계획 등 (고소인 2인과 255개 단체 공동고발) · 공동 고소고발장 제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12월 9일	대표고발인 초동조사 출석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담당자: A 수사관) · 고소고발 취지 및 고발 내용 진술, 추가 증거자료 제출 · 피고발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 요청
2017년 2월	담당 수사관 변동	· 인사 발령으로 인한 수사관 변동 (A 수사관 → B 수사관)
2017년 3월	각하 예정 통보	· 수사 진행 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하자 처벌 조항이 없음으로 인해 각하 처리될 예정이고, 진행 사항을 설명해 줄테니 방문하라는 통보를 받음. (담당: C 경사)
2017년 4월 7일	경찰청 재방문 (재수사 및 각하 지연 요청)	·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피고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각하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함. · 피고발인들을 특정할 수 없어 수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함. · 본 센터에서 피고발인 정보(대표자 이름 및 주소)를 제출하며 재수사를 요청함. 방문 후 당일에 피고발인 1인에 대한 법인등기부도 추가 제출함.
2017년 7월 24일	경찰청 재방문 (불기소 의견 송치 예정 통보)	· 피고발인 조사 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고 수사 결과 설명을 듣기 위해 재방문함. · 피고발인 조사 결과 7개의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는 4명이었음. 1:1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상황에 운영자가 가담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이었음. 또한 조사를 받은 피고발인들은 어플리케이션 내 금지어를 설정하여 자체 검열하고 있으며 어플리케이션 운영으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않다고 진술했다고 함.
2017년 8월 18일	검사실 변동	· D 검사실에서 E 검사실로 변동됨.
2017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처분	· 4명 피고발인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결
2017년 11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통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통지를 우편으로 수령
2017년 12월 1일	항고장 제출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항고장 및 증거자료 제출
2017년 12월 22일	추가 증거자료 제출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항고 추가 증거자료 제출

2018년 5월 2일	항고기각 처분	· 서울고등검찰청 항고기각 통지를 우편으로 수령 · 추가 증거자료 취합하여 재항고 신청
2018년 5월 10일	재항고장 제출	· 대검찰청/ 재항고장 제출
2018년 5월 10일	재정신청서 제출	·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서 및 재정신청이유서 제출 · 6월에 재정신청이유보충서 제출
2018년 6월 21일	재항고사건 접수 통지	· 대검찰청 통지를 우편으로 수령
2018년 9월 27일	재정신청 기각통지	· 서울고등법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으며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어 기각.
2018년 11월 30일	재항고 기각통지	· 대검찰청/ 항고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기각.

⑤ 2017. 7.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한 플랫폼 채팅몬을 고발하였다.

고발내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합니다)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되었다.

채팅몬 화면의 공지	상세보기를 누르면 나오는 서비스 안내문
 '선입금 사기 이제 걱정마세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택시비를 환불해드립니다'고 유인하여 성매매를 손쉽게 하도록 편의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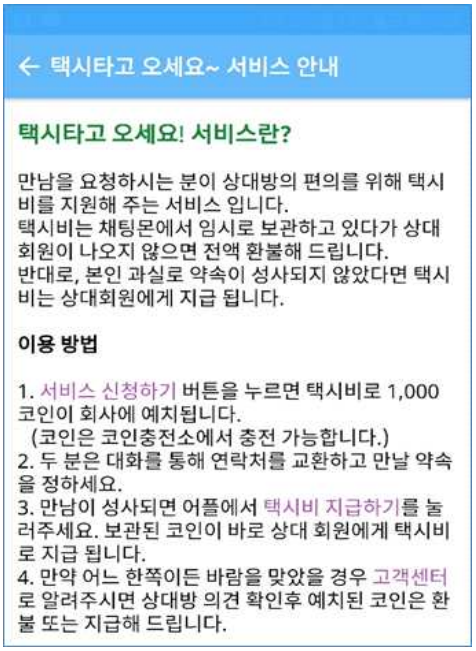

⑥ 2017년 10월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법률 제정의 일환으로 ‘아청법 일부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2017년 12월 정춘숙 의원실과 함께 입법 발의하였다.(붙임자료1 참조)

⑦ 2019년

2019년 4월 갑자기 스마트폰 채팅 어플들이 성인인증절차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4월 12일자로 사이버또래상담팀에서 확인해본 결과 총20개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이 성인인증절차를 도입했다. 과거에 깔렸던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는 인증을 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접속이 가능하며, 새롭게 설치할 때만 인증을 하게 되어 있어 인증과 비인증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로인해 사이버 상 성착취 플랫폼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성인 인증 절차 도입 스마트폰 채팅 어플 (총 2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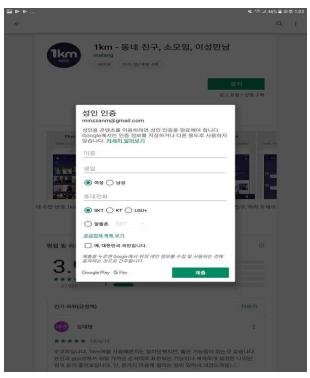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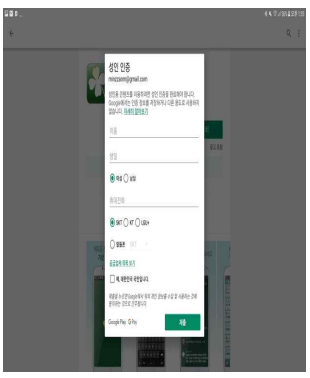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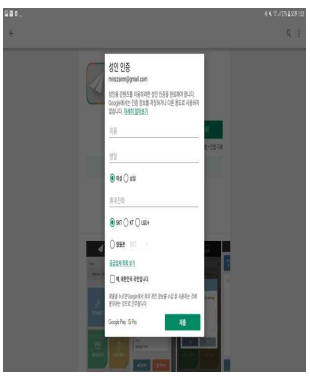
1km	네잎클로버	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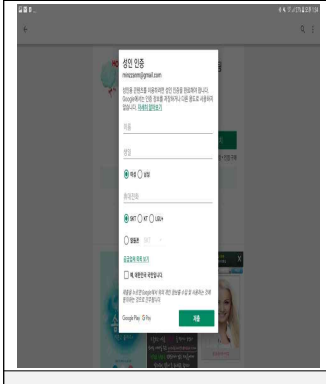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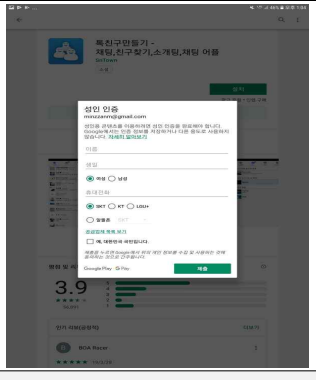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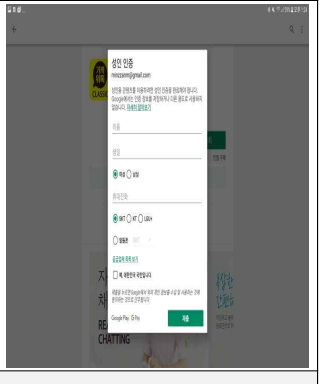
솜사탕톡	톡친구만들기	가까워톡클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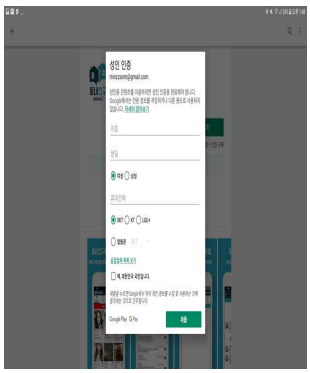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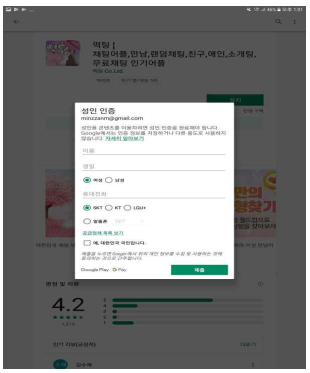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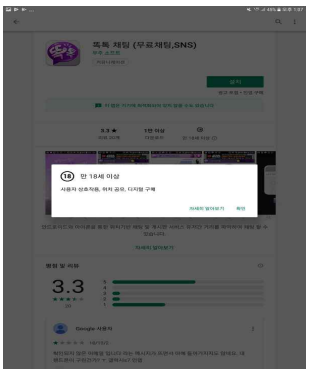
동네친구	떡팅	똑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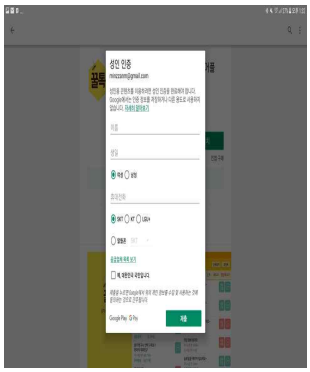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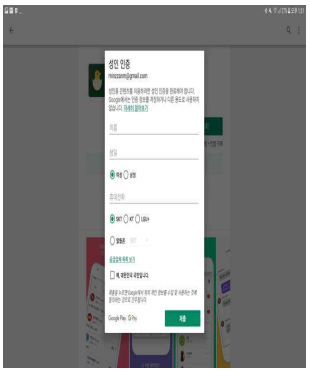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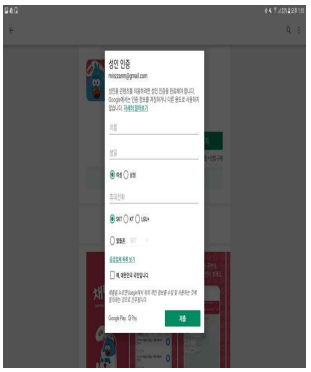
꿀톡	원나잇톡	채팅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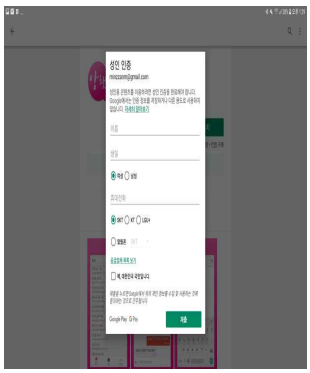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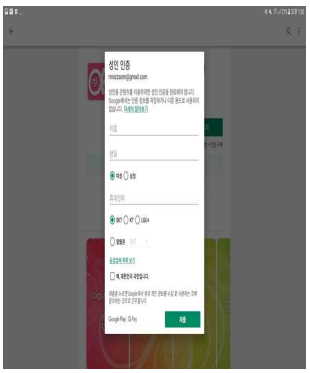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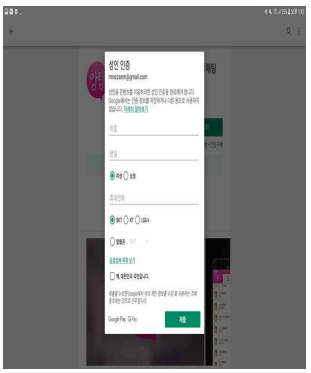
앙챗	앙톡	앙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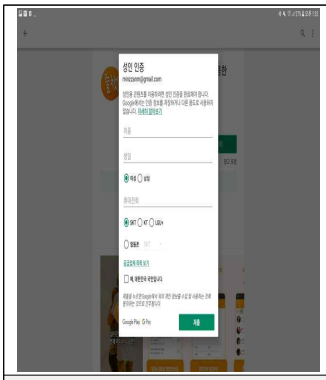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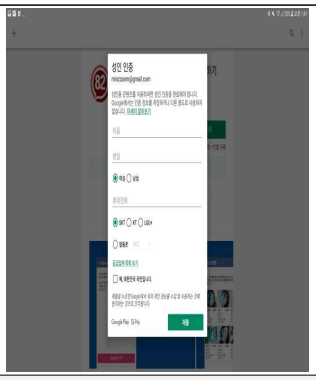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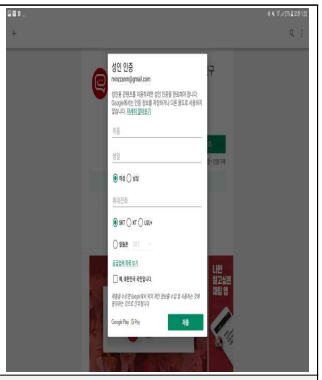
즐챗	82톡+	다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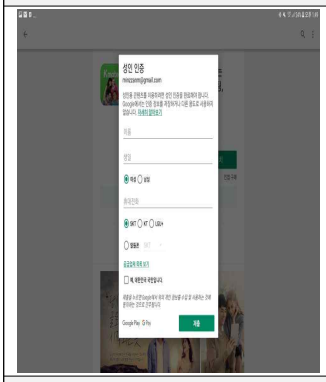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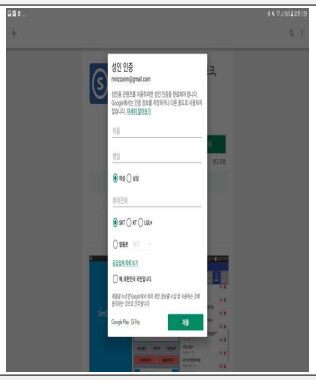	
케이메이트	심심톡 18세	

*심심톡은 이용자연령 12세, 18세 으로 분리되어 2개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이 있음.

3. 2019년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특징

1) 2019년 11월 22일 기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의 종류와 성착취 정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모니터링 대상 스마트폰 채팅 어플 목록

사이버또래상담팀에서 주로 모니터링중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원스토어에

서 다운로드 가능한 스마트폰 채팅 어플 25개 중 9개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성착취 범죄글이 자주 게시됨.

연번	2019년 모니터링 중인 스마트폰 채팅 어플	성착취 범죄글 게시 정황이 빈번하여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중인 스마트폰 채팅 어플
1.	즐톡	
2.	앙톡	
3.	영톡	
4.	앙스	√
5.	82톡	
6.	앙채팅	
7.	앙팅(앙팅즐팅)	√
8.	낯선사람 랜덤채팅	
9.	채팅몬	√
10.	헤이팅	√
11.	심팅	√
12.	꿀톡	
13.	원나잇톡	
14.	핫팅	
15.	앙챗	√
16.	스윗톡	
17.	다톡	√
18.	국민어장	√
19.	속삭임	
20.	핑톡	
21.	텐톡	
22.	섹톡	
23.	랜덤챗	
24.	심심톡	
25.	즐챗	√

2) 스마트폰 채팅 어플 내 성매수 제안

아동·청소년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닉네임이나 게시글에 자신의 나이를 밝히고, 가벼운 흥미를 가지고 접속했을 때, 아동·청소년은 성매수자의 표적이 되기 쉽다. 성매수자들은 아동·청소년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인 것처럼 접근하여 집요하고 끈질기게 아동·청소년의 환심을 사려고 하며, 끊임없이 자신이 좋은 사람임을 어필함과 동시에 성적인 주제로 대화를 이어나간다.

〈스마트폰 채팅 어플 내 성착취 현황〉

<table>
<tr>
<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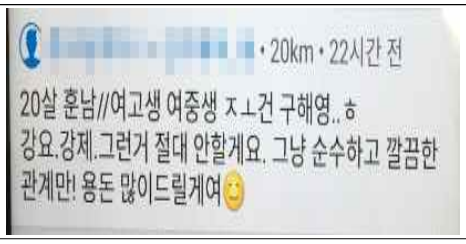
</td>
<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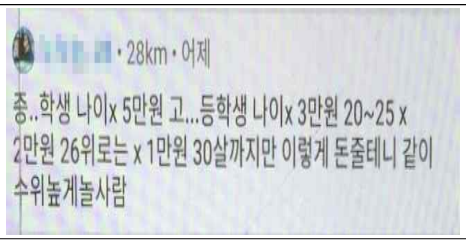
</td>
</tr>
<tr>
<td>[국민**]
20살 훈남// 여고생 여중생 조건 구해영..ㅎ 강요.강제,그런거 절대 안할게요. 그냥 순수하고 깔끔한 관계만! 용돈 많이드릴게여</td>
<td>[앙*]
중학생 나이*5만원, 고등학생 나이*3만원, 20~25세*2만원, 26세 이상은 나이*1만원, 30세까지 돈 줄테니 같이 수위높게 놀사람</td>
</tr>
<tr>
<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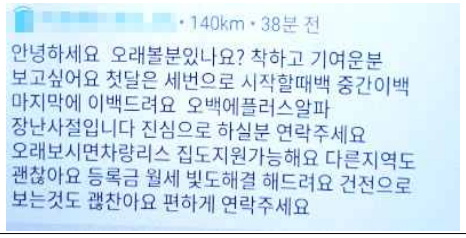
</td>
<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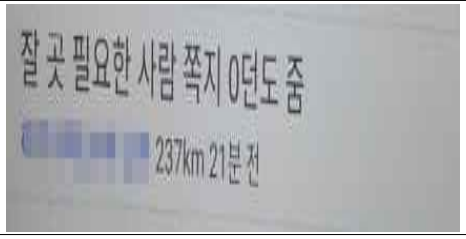
</td>
</tr>
<tr>
<td>[국민**]
첫달은 3번으로 시작할 때 중간에 200만원, 마지막에 200만원드려요. 차량, 집, 등록금, 월세. 빚도 해결해드려요.</td>
<td>[헤**]
잘곳 필요한 사람 쪽지하면 용돈도 줌</td>
</tr>
</table>

3)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다른 플랫폼으로의 확산 및 연동

대화가 지속되면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의 특성으로 인해 닉네임 혹은 채팅글에 타 SNS(라인, 카카오톡 오픈채팅, 텔레그램, 트위터 등) 아이디를 적어 놓는 경우가 많으며,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도 원활한 대화, 영상공유, 대화저장 및 백업 기능 등 자신의 편의를 위해 타 SNS로 이동하거나 스마트폰 채팅 어플과 병행하여 사용한다.

사용하기에 편리한 타 SNS로 넘어간 경우 그루밍 수법은 더욱 은밀해지고, 교묘해진다. 그루밍 가해자들은 아동·청소년에게 더 구체적인 신상정보, 신체 사진, 영상을 요구하며 요구에 응하지 않을시 그 동안의 대화내용은 협박의 수단이 된다.

타 SNS중에서도 라인은 익명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통화, 영상통화, 사진전송, 영상공유, 단체 대화방 개설 등이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그루밍 가해자들은 성착취의 매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채팅 어플 내 다른 플랫폼으로 확산〉

<table>
<tr><td>
</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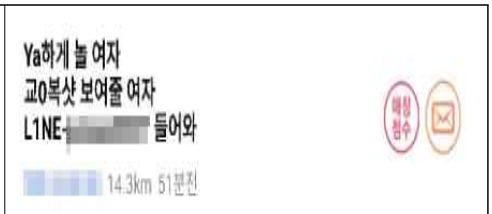
</td></tr>
<tr><td>용돈 필요한사람
초록색(라인) 마지막 선착 1명</td><td>야하게 놀 여자
교복샷 보여줄 여자 L1NE(라인) 들어와</td></tr>
<tr><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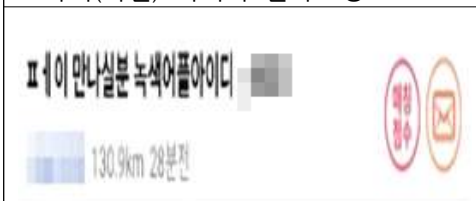
</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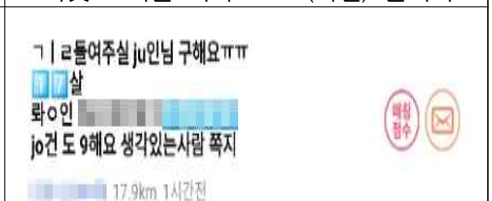
</td></tr>
<tr><td>돈 받고 만나실분 녹색어플(라인)아이디</td><td>길들여주실 주인님구해요 17살 롸인(라인) 조건도 구해요 생각있는사람 쪽지</td></tr>
<tr><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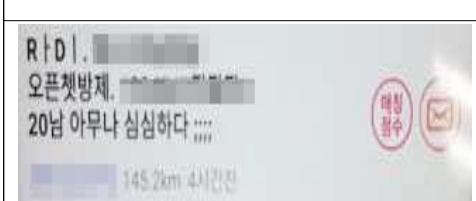
</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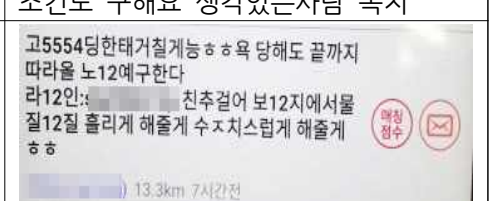
</td></tr>
<tr><td>R ㅏ D ㅣ (라인아이디), 오픈챗방제(카카오톡 오픈채팅 방제목) 20남 아무나 심심하다;;;;</td><td>고딩한테거칠게능욕당해도 끝까지 따라올 노예구한다. 라12인(라인)친추 걸어 (생략).</td></tr>
</table>

스마트폰 채팅 어플 내에서만 타 SNS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밀집해있는 다른 플랫폼(유튜브, 지식인, 트위터, 익명질문-ASKED, 텀블러 등)에서도 확산되어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보고 접근할 수 있도록 라인아이디를 비롯하여 타 SNS계정을 공유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한 후, 은밀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성착취가 일어나고 있다.

〈타 플랫폼 확산 현황〉

<table>
<tr>
<td>
</td>
<td> </td>
</tr>
<tr>
<td>[익명질문 ASKED-라인]
본인의 성기사진 및 라인 아이디 공유</td>
<td>[익명질문 ASKED-라인]
본인의 성기사진 및 라인 아이디 공유</td>
</tr>
<tr>
<td>
</td>
<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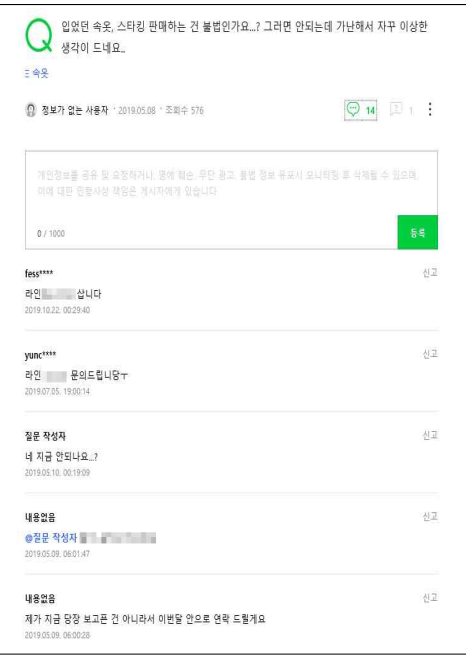
</td>
</tr>
<tr>
<td>[유튜브-라인] 중학생이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하자, 만나자며 라인아이디를 공유함.</td>
<td>[지식인-라인] 중학생이 속옷, 영상 판매가 불법인지 물어보는 지식인글에 라인아이디와 속옷 거래를 원한다는 댓글을 공유함.</td>
</tr>
</table>

스마트폰 채팅 어플 내에서, 혹은 다른 SNS로 넘어간 후 주고받은 모든 내용들은 성착취 가해자들에게는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며, 온라인 상에서의 성착취 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뿐 아니라 그루밍과 협박을 통하여 갈취한 사진이나 영상, 신체정보 등을 묶어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시작된 성착취가 다른 플랫폼으로 유통되고, 성착취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까지 철처하게 이용당하며 자신의 신체정보 혹은 사진·영상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이름과 제목이 붙어 재유통 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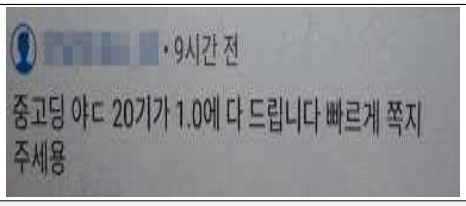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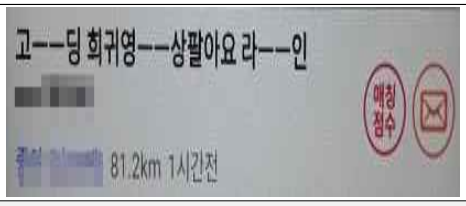
[국민어장] 중고딩 야동 20기가 1만원에 다 드립니다	[헤이팅-라인] 고등학생 희귀영상팔아요 라인(아이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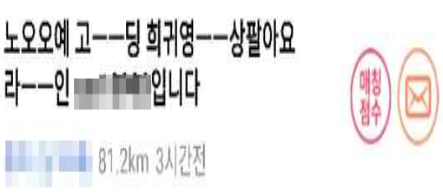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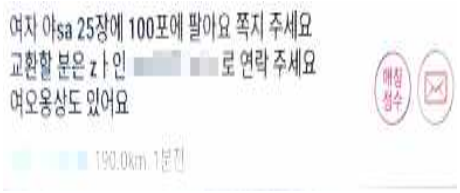
[헤이팅-라인] 노예 고등학생 희귀영상 팔아요 라인(아이디)입니다.	[헤이팅-라인] 여자 야한사진 25장에 100포인트에 팔아요. 교환할 분은 라인(아이디)로 연락주세요. 영상도 있어요.

<table>
<tr>
<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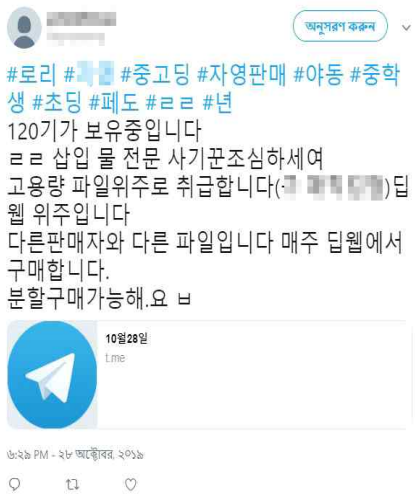
</td>
<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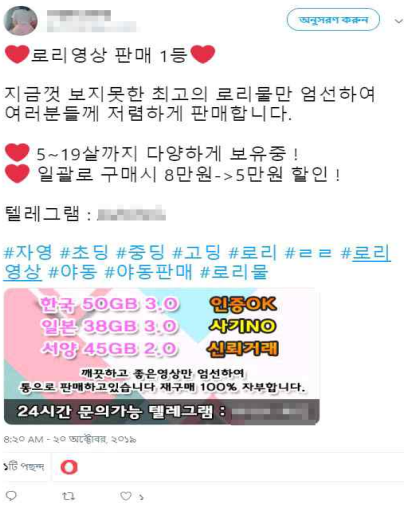
</td>
</tr>
<tr>
<td>[트위터-다크웹]
#로리 #중·고등학생 #자영(자위영상)판매 #야동 #중학생 #초딩 #페도필리아 #ㄹㄹ(로리) #년
120기가 보유중입니다.(생략)
매주 다크웹에서 구매합니다.</td>
<td>[트위터-텔레그램]
로리영상 판매 1등
(생략) 텔레그램(아이디)
#자영(자위영상) #초등학생 #고등학생 #로리 #ㄹㄹ(로리) #로리영상 #야동 #야동판매 #로리물</td>
</tr>
<tr>
<td>
</td>
<td>
</td>
</tr>
<tr>
<td>[아자르-텀블러-라인] 아자르에서 화상 채팅 녹화파일을 텀블러, 트위터, 라인 계정을 홍보하며 판매함.</td>
<td>[아자르-텀블러-라인] 아자르에서 화상 채팅 녹화파일을 텀블러, 트위터, 라인 계정을 홍보하며 판매함.</td>
</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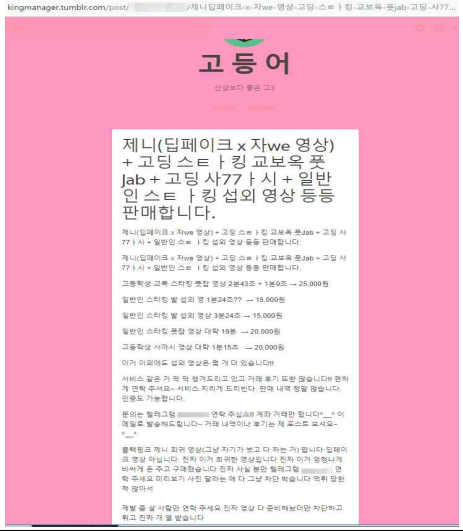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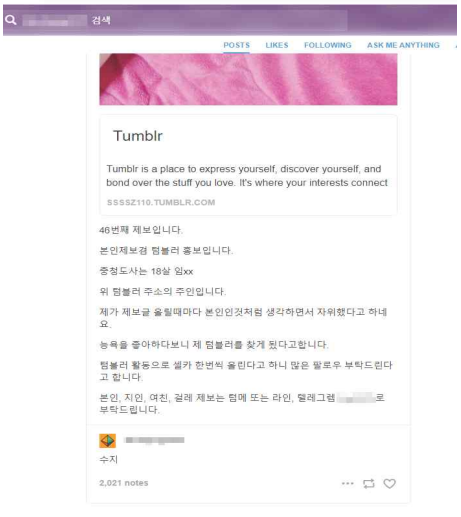
[텀블러-텔레그램] 고등학생 성착취물 판매 게시글	[텀블러-텔레그램] 고등학생 성착취물을 재유통함.

4. 방심위 및 사이버경찰청의 미온적 대처

십대여성인권센터가 2015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신고한 건수와, 그에 따른 신고처리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연도가 증가하며 스마트폰 채팅 어플 내 성매매 정황이 보이는 이용자들에 비례하여 신고의 수 또한 늘어났으며, 성매매 정황이 보여 신고하였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준에 맞지 않아 실질적 제재처리가 된 건수는 5년 모두 3~40% 정도를 머물고 있다.[4)]

4) 1) 접속차단 :
(1) 국외 :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ISP) 등에게 국내 이용자가 해당 정보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 요청함.
(2) 국내 :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IPS)의 경우 사이트 폐쇄 및 접속차단이 되도록 조치함(처리결과가 접속차단이 아닌 이용자 이용해지로 나옴).
2) 각하 : 심의불가
(1) 미유통 :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진 삭제 및 폐쇄되는 등 현재 유통되지 않는 상태이거나, 신고접수 후 업데이트 등으로 URL이 변경되어 추적이 어려움.
(2) 중복신고 : 동일한 정보에 대해 심의결정이 이루어졌거나, 신고접수가 중복되어 각하 처리됨.
(3) 요건불비 : 심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함.
3) 이용자 이용해지 : 해당 어플리케이션 불량이용자의 이용을 해지 함(휴대폰 단말기를 변경하지 않으면 재가입 및 재접속 불가능).

2015년					
구분	총계	각하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이행	해당없음
		미유통	중복신고		
건	39	16	3	4	16

2016년								
구분	총계	각하		이용자 이용해지	이용자 이용정지	내용확인 불가	해당 없음	처리중
		미유통	중복신고					
건	485	44	26	87	6	6	316	-

2017년									
구분	총계	각하			이용자 이용해지	이용자 이용정지	내용확인 불가	해당 없음	처리중
		미유통	중복 신고	요건 불비					
건	705	146	8	22	221	17	-	291	-

2018년										
구분	총계	각하			이용자 이용해지	이용자 이용정지	내용 확인 불가	해당 없음	특정 검색 결과 확인 불가	처리중
		미유통	중복 신고	요건 불비						
건	608	13	36	31	245	5	19	257	2	-

2019년 1월~10월[5]										
구분	총계	각하			이용자 이용해지	이용자 이용정지	내용 확인 불가	해당 없음	특정 검색 결과 확인 불가	처리중
		미유통	중복 신고	요건 불비						
건	497	1	7	4	248	-	1	174	-	6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불량 이용자에게 신고 제재처리를 하는 기준은 사진에 음부가 보이거나 성매매를 의미하는 단어나 금액이

4) 이용자 이용정지 : 해당 어플리케이션 불량이용자의 이용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정지함.
5) 해당없음 : 신고내용이 성매매 정황에 해당되지 않음.
6) 처리불가 : 해외서버로 인한 기술력 부족으로 처리가 불가능함.
7) 내용확인불가: 신고 접수 시점에서 신고대상 정보가 이미 삭제되었거나 폐쇄되는 등의 사유로 신고 대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신고대상이 불명확하거나 신고내용이 부정확하여 해당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임.
8) 특정 검색결과 확인 불가 : 검색결과 페이지의 여러 게시물 중에서 신고하려는 게시물이 특정되지 않아 민원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9) 청소년 유해매체물 :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로 판단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SP) 청소년 유해표시, 광고선전 제한 등의 청소년보호 의무를 이행하게 됨.
5) 최종보고서가 아니라 정확한 통계로 보기는 어렵다.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제재처리를 한다. 하지만, 실제 스마트폰 채팅 어플 내에서는 은어를 사용하여 성적인 행위와 금액을 제시하며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제재처리를 피해간다. 또한, 금액과 행위가 제시되어있어 신고하였으나 성착취로 취급되지 않아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키스알바(키스만 주고받는 것)와 자위영상 판매의 경우, 금액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해당없음' 처리 결과를 받는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이 실제 스마트폰 채팅 어플 이용하여 성을 착취하려는 불량 이용자를 제재하기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방심위 신고화면〉 **〈방심위 신고처리결과 현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미온적 대처에 다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한 성매매 업소 홍보 사이트 중, 업소를 특정 지을 수 있는 정보가 게시된 성매매 업소 홍보 사이트를 찾아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해 보았으나 사이버경찰청에서 역시 해당 관할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우며, 실제 그 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수사가 착수된다고 말하는 등 소극적인 수사 태도를 보였다. 사이버경찰청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된 사이트를 신고하고 있으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한 사이트라면 '각하(중복신고)' 처리를 받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는 누구나 검색을 통해 성매매 업소 홍보에 대한 열람이 가능한 것을 단지 온라인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4. 2019년 4월 앙챗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발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판매 성범죄자를 고발하다.

1) 스마트폰 채팅 어플 앙챗에서 발견한 영상판매 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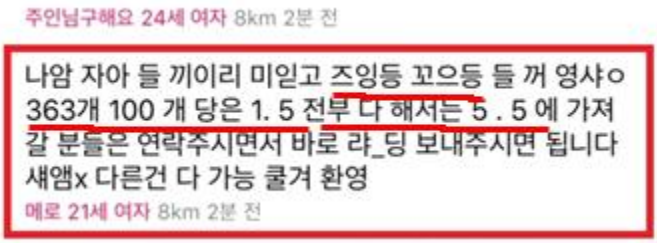

남자들끼리 믿고 중딩 고딩들꺼 영상 363개 100개당 1.5(만오천원) 전부 다 해서는 5.5(오만오천원)에 가져갈 분들은 연락 주시면 바로 라디(라인아이디) 보내주시면 됩니다. 샘플x 다른건 다 가능 쿨거래 환영

2) 구입 과정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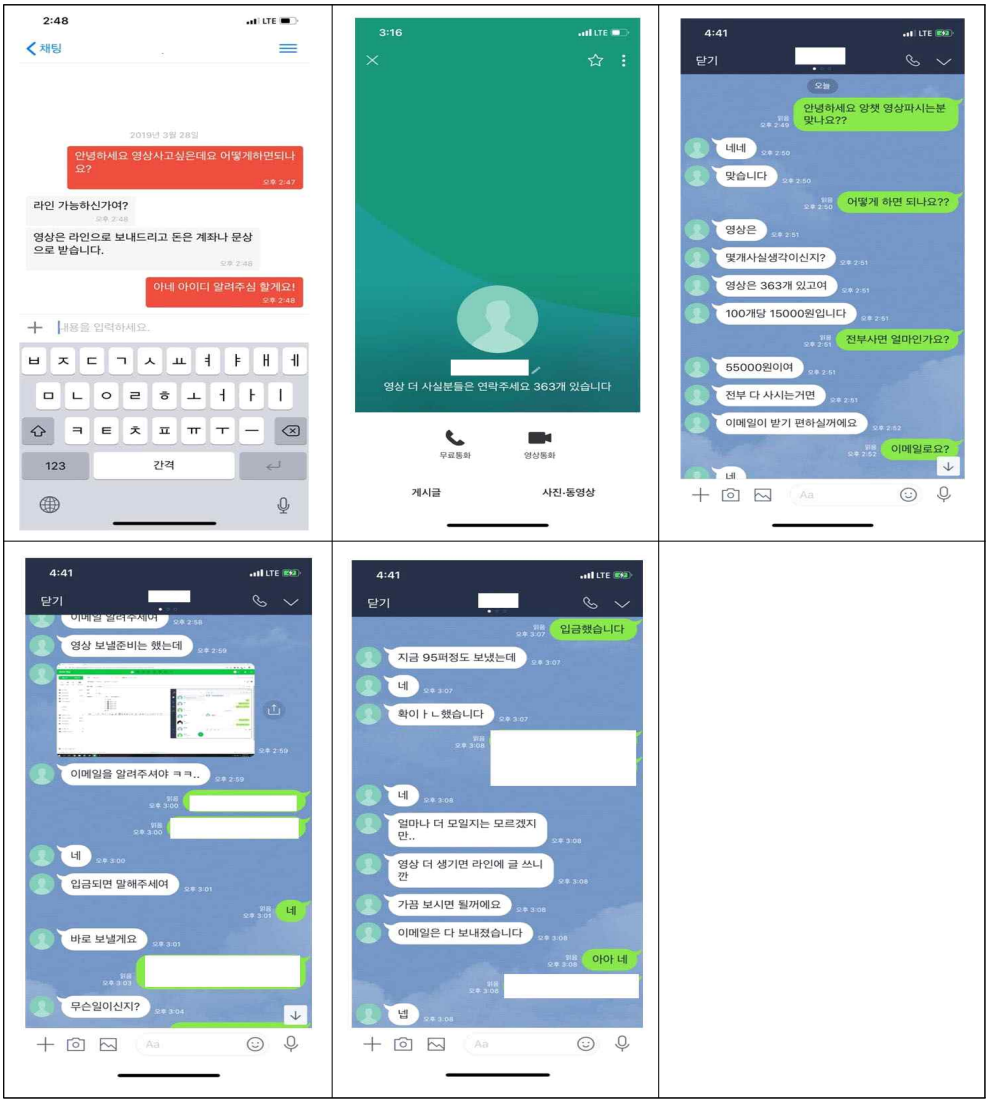

3) 아청법 음란물 제작배포 등으로 고발조치 하였으며, 제작과정부터 수사할 것을 요청함.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음을 통지받았고, 현재 구속 중, 검찰에 송치된 상황임.

(1) 다크웹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매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범죄이지만,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상황임.

(2) 그동안 이러한 문구를 수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거의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왔음.
(3) 성착취 동영상 판매 범죄자를 잡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었음에도 그동안 경찰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
(4) 성착취 동영상 판매 범죄자는 안전을 자신한 듯, 실명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음.
(5) 범인 검거 후 자택 컴퓨터에서 수많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이 발견되었음.
(6)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범인 검거 후 수많은 동영상 구매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함.

5. 2019년 8월 원스토어는 아동·청소년을 성착취(성매매)로 알선·유인하고 음란물 유통에 이용되고 있는 채팅앱 및 소개팅앱에 대하여 청소년 '이용불가등급'으로 연령등급 정책을 변경하였다. (붙임자료2 참고)

1) 2019. 7. 17. 원스토어 공지사항에 개시된 채팅/소개팅 상품에 대한 연령등급 정책변경 고지 화면

공지사항

[공지]채팅/소개팅 상품에 대한 연령등급 정책변경 고지
2019.07.17(UTC+09:00) | 조회수320

안녕하세요 원스토어 개발자센터입니다.

최근 '채팅'과 '소개팅' 상품을 악용(성매매, 음란물 유통)하는 사용되는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원스토어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채팅' 및 '소개팅' 등의 상품에 대한 정책을 변경 고지 하오니 관련 사업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8월 19일부터 지인기반의 '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제외한 채팅/소개팅 상품은 향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 이후 '청소년이용불가' 미만의 등급으로 등록/업데이트 요청한 상품은 반려 또는 판매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 2019년 8월 19일 이전 등록된 상기 채팅/소개팅 상품은 반드시 8월 19일 까지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 2019년 8월 19일 까지 등급변경이 되지 않은 채팅/소개팅 상품의 경우, 원스토어 개발자센터는 직권으로 해당 상품의 등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용등급 변경 경로 : 개발자센터 > Apps > 상품선택 > 카테고리 항목 > 이용등급 변경 후 저장 (앱은 등급 분류번호 미필요)

청소년의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환경 구축을 위해 개발자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devhelper@onestore.co.kr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2) 구글 및 원스토어 스마트폰 채팅 어플 연령제한 모니터링 (6~7월)

* 변동사항 없으면 ○표시,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사항 기재함.

* 앱장터에서 애플리케이션 검색결과 없는 것은 빈칸.

분류	연번	어플명	구글	원스토어	6/25 ~28	7/1 ~5	7/8 ~10	7/11	7/12	7/15 ~18	7/19	7/22 ~31
홍보 어플	1	즐톡		15세	O	O	O	O	O	O	O	O
	2	앙톡		15세	O	O	O	O	O	O	19세	19세
	3	영톡		15세	O	O	O	O	O	O	O	O
	4	심톡		15세	O	O	O	O	O	O	O	O
	5	앙스		15세	O	O	O	O	O	O	19세	19세
	6	82톡+	18세	15세	O	O	O	O	O	O	O	O
	7	앙채팅		15세	O	O	O	O	O	O	O	O
	8	알바신공	18세		O	O	O	O	O	O	O	O
	9	캠팅			O	O	O	O	O	O	O	O
	10	일탈톡	18세		O	O	O	O	O	O	O	O
	11	앙팅	18세	15세	O	O	O	O	O	O	O	O
	12	조건톡Z			O	O	O	O	O	O	O	O
	13	낯선사람 랜덤채팅		15세	O	O	O	O	O	O	O	O
	14	채팅몬s	18세	15세	O	O	O	O	O	O	O	O
	15	헤이팅		15세	O	O	O	O	O	O	O	O
	16	심팅		15세	O	O	O	O	O	O	O	O
	17	꿀톡	18세	15세	O	O	O	O	O	O	O	O
	18	원나잇톡	18세		O	O	O	O	O	O	O	O
	19	상상톡	12세		O	O	O	O	O	O	O	O
	20	핫팅			O	O	O	O	O	O	O	O
	21	짱챗(앙챗)	18세		O	O	O	O	O	짱챗	O	O
	22	스윗톡		15세	O	O	O	O	O	O	O	O
	23	다톡	18세		O	O	O	O	O	O	O	O
	24	아자르	12세		O	O	O	O	O	O	O	O
게시 판형 어플	25	1KM	18세		O	O	O	O	O	O	O	O
	26	네잎 클로버	18세		O	O	O	O	O	O	O	O
	27	밤비	18세		O	O	O	O	O	O	O	O
	28	솜사탕톡	18세		O	O	O	O	O	O	O	O
	29	모씨	12세		O	O	O	O	O	O	O	O
	30	즐톡톡			O	O	O	O	O	O	O	O
그외 어플	31	똑톡	18세		O	O	O	O	O	O	O	O
	32	국민어장	16세		O	O	O	O	O	O	O	O
	33	캠톡		15세	O	O	O	O	O	O	O	O
	34	즐팅		15세	O	O	O	O	O	O	O	O
	35	KIN팅		15세	O	O	O	O	O	O	O	O
	36	즐챗	18세		O	O	O	즐챗	O	O	O	O
	37	심심채팅		15세	O	O	O	O	O	O	O	O
	38	러브톡	16세	15세	O	O	O	O	O	O	O	O
	39	동네채팅	18세	15세	O	O	O	O	O	O	O	O
	40	동네친구2	18세		O	O	O	O	O	O	O	O
	41	즉석톡		15세	O	O	O	O	O	O	O	O
	42	이브캠		15세	O	O	O	O	O	O	O	O
	43	딸기캠		15세	O	O	O	O	O	O	O	O

	44	써니캠	16세		O	O	O	O	O	O	O	O
	45	벗팅		15세	O	O	O	O	O	O	O	O
그외어플	46	닉토	18세	15세	O	O	O	O	O	O	O	O
	47	언제나 즐톡	18세		O	O	O	O	O	O	O	O
	48	즐톡펭팔	18세		O	O	O	O	O	O	O	O
	49	다함께 즐톡	18세		O	O	O	O	O	O	O	O
	50	즐톡방	18세		O	O	O	O	O	O	O	O
	51	즐팅♡방	16세		O	O	O	O	O	O	O	O
	52	즐겁게톡	16세		O	O	O	O	O	O	O	O
	53	즐톡k			O	O	O	O	O	O	O	O
	54	올톡	18세		O	O	O	O	O	O	O	O
	55	올챗	18세		O	O	O	O	O	O	O	O
	56	톡친구 만들기	18세		O	O	O	O	O	O	O	O
	57	톡친구 모여라	12세		O	O	O	O	O	O	O	O
	58	떡팅	18세		O	O	O	O	O	O	O	O
	59	앙톡☆클린	18세		O	O	O	O	O	O	O	O
	60	케이 메이트	18세		O	O	O	O	O	O	O	O
	61	심심톡(뉴)	18세		O	O	O	O	O	O	O	O
	62	썸팅new	18세		O	O	O	O	O	O	O	O
	63	썸팅	12세		O	O	O	O	O	O	O	O
	64	영챗	18세		O	O	O	O	O	O	O	O
	65	콩팅	18세		O	O	O	O	O	O	O	O
	66	심톡Q	18세		O	O	O	O	O	O	O	O
	67	심톡라이브	18세		O	O	O	O	O	O	O	O
	68	가까워톡 클래식	18세	15세	O	O	O	O	O	O	O	O
	69	가까워톡2		15세	O	O	O	O	O	O	O	O
	70	속삭임	16세	15세		O	O	O	O	O	O	O
	71	돛단배	18세			O	O	O	O	O	O	O
	72	알바퀸	3세				O	O	O	O	O	O
	73	좋은만남	16세				O	O	O	O	O	O
	74	Hi-There	12세	12세						O	O	O
	75	모여라단톡	12세							O	O	O
	76	텐톡	18세							O	O	O
	77	오픈톡	18세							O	O	O
	78	꿀팅	18세							O	O	O
	79	소라넷캠	18세							O	O	O
	80	써니톡	18세								O	O
	81	인싸채팅	18세								O	O
	82	오톡	18세									O
	83	마이피플		15세								O
	84	Ntalk	12세	15세								O
	85	리얼랜챗		15세								O
	86	앙캠		15세								O
	87	아보카톡	12세	12세								O
	88	충전캠		19세								O
	89	지지톡		15세								O
	90	챗톡	12세									O

그외 어플	91	오렌지톡	18세	15세								O
	92	코코아톡		15세								O
	93	인기톡		15세								O
	94	마이피플		15세								O
	95	앤팅		15세								O
	96	리얼랜챗		15세								O

3) 구글 및 원스토어 스마트폰 채팅 어플 연령제한 모니터링 (8월)

* 변동사항 없으면 ○표시,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사항 기재함.

* 앱장터에서 애플리케이션 검색결과 없는 것은 빈칸.

분류	연번	어플명	구글	원스토어	8/1~9	8/12	8/13	8/16	8/19 오전	8/19 오후	8/20	8/26
홍보 어플	1	즐톡		15세	O	O	O	O	O	19세	O	O
	2	앙톡		15세	O	O	O	O	O	19세	O	O
	3	영톡		15세	O	O	O	O	O	19세	O	O
	4	심톡		15세	O	O	O	O	O	19세	O	O
	5	앙스		15세	O	O	O	O	O	19세	O	O
	6	82톡+	18세	15세	O	O	O	O	19세	19세	O	O
	7	앙채팅		15세	O	O	O	O	O	19세	O	O
	8	알바신공	18세		O	O	O	O	O	O	O	O
	9	캠팅		19세	O	O	O	원스토어	O	19세	O	O
	10	일탈톡	18세		O	O	O	O	O	O	O	O
	11	앙팅	18세	15세	O	O	O	O	O	19세	O	O
	12	조건톡Z			O	O	O	O	O	O	O	O
	13	낯선사람 랜덤채팅		15세	O	O	O	O	O	19세	O	O
	14	채팅몬s	18세	15세	O	O	O	O	O	19세	O	O
	15	헤이팅		15세	O	O	O	O	O	19세	O	O
	16	심팅		15세	O	O	O	O	O	19세	O	O
	17	꿀톡	18세	15세	O	19세	19세	19세	19세	19세	O	O
	18	원나잇톡	18세		O	O	O	O	O	O	O	O
	19	상상톡	12세		O	O	O	O	O	O	12세	12세
	20	핫팅			O	O	O	O	O	O	O	O
	21	짱챗(앙챗)	18세		O	O	O	O	O	O	O	O
	22	스윗톡		15세	O	O	O	O	O	19세	O	O
	23	다톡	18세		O	O	O	O	O	O	O	O
	24	아자르	12세		O	O	O	O	O	O	12세	12세
게시 판형 어플	25	1KM	18세		O	O	O	O	O	O	O	O
	26	네잎클로버	18세		O	O	O	O	O	O	O	O
	27	밤비	18세		O	O	O	O	O	O	O	O
	28	솜사탕톡	18세		O	O	O	O	O	O	O	O
	29	모씨	12세		O	O	O	O	O	O	12세	12세
	30	즐톡톡			O	O	O	O	O	O	O	O

그외 어플	31	똑톡	18세		O	O	O	O	O	O	O	O
	32	국민어장	16세		O	O	O	O	O	O	16세	16세
	33	캠톡		19세	O	O	O	O	O	19세	O	O
	34	즐팅	18세	19세	O	O	O	구글	O	19세	O	O
	35	KIN톡		19세	O	O	O	O	O	19세	O	O
그외 어플	36	즐챗	18세	19세	O	O	O	O	O	19세	O	O
	37	심심채팅		19세	O	O	O	O	O	19세	O	O
	38	러브톡	16세	19세	O	O	O	O	원/19세	원/19세	O	O
	39	동네채팅	18세	19세	O	O	O	O	O	19세	O	O
	40	동네친구2	18세		O	O	O	O	O	O	O	O
	41	즉석톡		15세	O	O	O	O	O	O	15세	15세
	42	이브캠		19세	O	O	O	O	O	19세	O	O
	43	딸기캠		19세	O	O	O	O	O	19세	16세	16세
	44	써니캠	16세		O	O	O	O	O	O	16세	16세
	45	벗팅		15세	O	O	O	O	O	O	15세	15세
	46	닉토	18세	19세	O	O	O	O	O	19세	O	O
	47	언제나즐톡	18세		O	O	O	O	O	O	O	O
	48	즐톡펭팔	18세		O	O	O	O	O	O	O	O
	49	다함께즐톡	18세		O	O	O	O	O	O	O	O
	50	즐톡방	18세		O	O	O	O	O	O	O	O
	51	즐팅♡방	16세		O	O	O	X	X	X	X	X
	52	즐겁게톡	16세		O	O	O	O	O	O	16세	16세
	53	즐톡k			O	O	O	O	O	O	O	O
	54	올톡	18세		O	O	O	O	O	O	O	O
	55	올챗	18세		O	O	O	O	O	O	O	O
	56	톡친구만들기	18세		O	O	O	O	O	O	O	O
	57	톡친구모여라	12세		O	O	O	O	O	O	12세	12세
	58	떡팅	18세		O	O	O	O	O	O	O	O
	59	앙톡☆클린	18세		O	앙톡 클린 2	O	O	O	O	O	O
	60	케이메이트	18세		O	O	O	O	O	O	O	O
	61	심심톡	18세		O	O	O	O	O	O	O	O
	62	심심톡(뉴)	12세		O	X	X	X	X	X	X	X
	63	영챗	18세		O	O	O	O	O	O	O	O
	64	콩팅	18세		O	O	O	O	O	O	O	O
	65	심톡Q	18세		O	O	O	O	O	O	O	O
	66	심톡라이브	18세		O	O	O	O	O	O	O	O
	67	가까워톡 클래식	18세	19세	O	O	O	O	O	19세	O	O
	68	가까워톡2		19세	O	O	O	O	O	19세	O	O
	69	속삭임	16세	19세	O	O	O	O	O	19세	16세	16세
	70	돛단배	18세		O	O	O	O	O	O	O	O
	71	알바퀸	3세		O	O	O	O	O	O	3세	3세
	72	좋은만남	16세		O	X	X	X	X	X	X	X
	73	Hi-There	12세	12세	O	O	O	O	O	O	12세	12세

	74	모여라단톡	12세		O	O	O	O	O	19세	O	O
	75	텐톡	18세		O	O	O	O	O	19세	O	O
	76	오픈톡	18세		O	O	O	O	O	19세	O	O
	77	꿀팅	18세		O	O	O	O	O	O	O	O
	78	꿀팅		15세		O	O	O	O	O	15세	15세
	79	소라넷캠	18세		O	O	O	X	X	X	X	X
	80	써니톡	18세		O	O	O	X	X	X	X	X
	81	인싸채팅	18세		O	O	O	O	O	O	O	O
	82	오톡	18세		O	O	O	O	O	O	O	O
	83	마이피플		19세	O	O	O	O	O	19세	O	O
	84	Ntalk	12세	19세	O	O	O	O	O	19세	구/12	구/12
	85	리얼랜챗		19세	O	O	O	O	O	19세	O	O
그 외 어플	86	앙캠		19세	O	O	O	O	O	19세	O	O
	87	아보카톡	12세	19세	O	O	O	O	O	19세	O	O
	88	충전캠		19세	O	O	O	O	O	19세	O	O
	89	지지톡		19세	O	O	O	O	O	19세	O	O
	90	챗톡	12세		O	O	O	O	O	19세	O	O
	91	오렌지톡	16세	19세	O	O	O	O	구/16	구/16	O	O
	92	오렌지톡-랜덤	18세						O	O	O	O
	93	코코아톡		19세	O	O	O	O	O	19세	O	O
	94	인기톡		19세	O	O	O	O	O	19세	O	O
	95	앤팅		19세	O	O	O	O	O	19세	O	O
	96	섹시봉		15세	O	O	O	O	O	O	15세	15세
	97	핫팅즉석폰팅		19세	O	O	O	O	O	19세	O	O
	98	러브토리		19세	O	O	O	O	O	19세	O	O
	99	걸팅		19세		O	O	O	O	19세	O	O
	100	폰팅		19세		O	O	O	O	19세	O	O

6.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의 양태와 진화형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범죄는 거의 모든 온라인 매체(스마트폰 채팅 어플, SNS 기반 어플, 오픈채팅, 인터넷 개인방송 등)들이 성착취 범죄자들에 의해 총체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범죄의 양태는 그루밍→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동영상 제작하게 하고 소지 및 공유, 판매→ 협박하여 성폭력, 성매매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어, 그루밍 피해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등 모두 같은 피해자임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1)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온라인을 통해 범죄 대상을 물색하고 아동·청소년의 호기심과 관심사를 집중 공략, 호감을 얻는다. 좋은 사람임을 피력하고 오프라인 상에서 만날 것을 집요하게 요청한다.

이때 사진 등을 요청하고 사진 등을 확보하면 부모나 학교에 알리겠다거나 SNS나 P2P 웹하드 등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수법으로 더 높은 수위의 사진을 요청하거나, 오프라인 만남을 강요한다. 웹하드나 SNS를 통해 사진/영상을 유포한다.

2) 이후 오프라인상에서 만남이 이루어 질 경우,

(1) 온라인상에서 그루밍된 아동·청소년을 오프라인 상에서 만날 때, 그루밍 가해자는 아동·청소년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담배, 술, 용돈 등을 제공 또는 영화나 신발, 옷 등을 사주면서 아동·청소년을 만나 룸카페, 고양이 카페 등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성적 대화를 나누고 성적 단계에 대해 가르치며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고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등의 말로 교육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단계에 대해 기대를 갖게 하고 결정을 하게 하면서 비밀을 만들어 나가고 부모님과 분리시키면서 성적 행동을 하게 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사랑을 하는 관계라 생각하며 신고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상하게 여긴 부모에 의해 발각되어 수사의뢰 될 경우 아동·청소년은 사랑하는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한다고 생각, 부모를 원망하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진술을 한다. 부모의 경우도 역시 아동·청소년에게 배신감을 느끼거나 성적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격하게 화를 내는 등 부모와의 갈등이 심각해진다.

수사기관 역시 아동·청소년이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자발적인지 강제적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대개는 강제나 폭행,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성인 가해자와 연인관계로 생각하여 성폭력이 무혐의 되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되는 상황이 빈번하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진술이 자주 바뀌고 부모나 학교 선생님 등 주변 관계자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생각하여 아동청소년 진술의 일관성 역시 신뢰받지 못한다. 피해자 진술이 영상 녹화되었다 하더라도 가해자 변호인 측에 의해 증거가 부동의 되면서 피해 아동·청소년은 재판에 증인으로 불려나가 가해자 변호인 측으로부터 부끄러운 질문이나 수치스러운

질문을 받고 또박또박 제대로 증언하여야 한다. 가해자 역시 대부분 아동·청소년의 나이를 몰랐다고 진술하고, 이후에는 사랑하는 사이였음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아내려 한다. 이 경우 수사는 아동·청소년의 실제 나이가 기준이 되기보다 가해자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아동·청소년의 나이가 기준이 되어 법이 적용되는 상황이 많다.

또한 성매매로 수사되는 경우도 있다. 강제성이 없다하여 성폭력이 인정되지 않고, 용돈, 담배 등을 제공받았다 하여 성매매로 수사되지만 이 경우도 연인관계 등을 이유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불기소 되거나 기소되었다 해도 무죄 판결될 수 있다. 성매매로 수사되었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자발성을 근거로 아동·청소년은 보호처분 될 수 있다.

(2) 그루밍 가해자는 아동·청소년을 만난 후 바로 집이나 모텔 등으로 데리고 가 성폭력한 후 그 사실을 비밀로 하게 하고 이를 위해 그 당시의 장면을 아동·청소년 몰래이거나 동의를 얻어 사진/영상을 찍은 후 사진/영상을 배포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한다.

아동·청소년들은 성폭력을 당한 후 매우 힘들고 혼란스러워하며, 대게 낯선 이와 채팅을 하고 개념 없이 따라나선 본인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부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진/영상 배포 협박을 받는다면 가해자의 지속적인 만남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학교생활이나 가족관계가 파탄이 날 수밖에 없다. 부모의 비난, 학교에서의 손가락질 등 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높다.

3) 사진/영상 배포 협박을 통한 가해자의 지속적인 만남 요구는 동일 가해자에 의해 성매매 알선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다른 성매수자와의 성매매로 대체되기도 하며, 가출 후 생존을 위한 성매매로 이어지기도 한다.

초기 그루밍 단계에서 끊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되면 아동·청소년은 부모의 비난과 학교로부터 퇴출 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된다. 아동·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성매수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가출 후 조직적으로 알선되기도 하고, 또래 포주가 되어 더 어린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알선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대게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리거나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고, 보호처분 된다.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는 이렇듯 동일 선상에서 심화 발전되는 범죄이다. 어디까지 피해자로 볼 수 있으며, 어디서부터 범죄자로 볼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들을 자발/강제로 나누어 범죄자나 피해자로 구분하면 안 된다.

7. 아동·청소년 대상 사이버 성매매 유입방지 및 차단을 위한 대책

1) 사이버 성매매 환경 대응방안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성착취 현장으로 유인하는 데에 있어 초기 경로가 되고 있는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은, 더 이상 개인의 자유로운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놓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이나 인터넷 카페/채팅을 규제할 관련 법령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제재 수단조차 전혀 없는 실정이다. IT 환경의 빠른 변화는 성매매 유인 환경을 인터넷 채팅 사이트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옮겨놓았으며, 최근에는 소통형 영상 채팅, 개인방송 형식으로 이동하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 이렇듯 빠르게 변화하는 사이버 성매매 유인, 알선, 조장 환경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1) 변화하는 사이버 성매매 환경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처벌 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있어야 한다. 현재 법령은 음란사이트나 음란물을 모니터링 또는 신고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한다)를 통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심의하고 이후 음란물로 판정이 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신고를 각하시키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음란물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사이버 상의 성매매 알선, 구매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고나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상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폐쇄된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경찰과 연계하여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알선자나 구매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 사이트가 폐쇄된다하더라도 사이트 운영자는 IP 주소만 옮기면 아무런 문제도 없으며, 알선자나 구매자는 어떠한 흠결도 없이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것이다. 제정될 법률은 우선 채팅 사이트나 스마트폰 채팅(영상) 어플, 인터넷 개인 방송 등의 운영자가 성매매 정보의 알선과

성매매 조장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으로 성매매 알선세력이라는 전제가 분명하여야하며,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후 사이트, 스마트폰 채팅 어플, 인터넷 개인 방송 등 사이버 성매매 환경의 폐쇄와 동시에 반드시 경찰의 단속과 수사가 함께 이루어져 성구매자, 알선업자에 이르기까지 처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2) 사이버 상의 성매매 환경을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을 실행하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향후 사이버상 성매매 시장은 현실세계보다 더욱 확대될 수 있고, 그 대상은 사이버 환경에 쉽게 부응하는 아동·청소년이 될 수 있어 그 폐해는 점점 더 심각해 질 것이다. 따라서 IT 기술적 진보와 함께 사이버상에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이 가능한 전문 영역을 포함한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3) 빠른 속도로 진화, 발전하고 있는 사이버 성매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는 민간영역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 발전시켜야 한다. 단기간의 사업적 지원보다는 안정적인 기구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아동·청소년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 성매매 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법령과 제재수단이 병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그루밍법'과 네덜란드의 '10살 가상소녀 스위티' 프로젝트는 시사점이 크다. 또한 신고의무자를 채팅 사이트나 스마트폰 어플 운영자까지 포함시켜 성매매 유인이나 정보제공이 발견될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한다든지, 방송통신사업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KT나 SK 등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성매매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5) 규제 정책이 IT 기술발전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되는 대신 기업의 자율적 조치에 맡기는 방식으로 정책이 입안되고 있다. 그러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자율적 조치가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좋은 기술은 발전시키고, 성착취를 매개로 발전하는 기술은 반드시 제재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보호 또한 가해자들의 표현의 자

유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피해자들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보호가 억압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강력한 제재방안이 포함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이버상 성착취 범죄에 대해 적절한 기술개발과 기술적 조치 등 자체 내규를 가지고 잘 대응하고 있는 기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기술 개발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처벌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시키기 위한 교육, 캠페인 등 여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자발/강제를 통해 피해자를 구별하고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

만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성매매의 동의 여부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인 성매매를 위축시키기는커녕 점점 확장시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 법률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알선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더불어 성매수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강화가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 상 성매수 범죄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이 알선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 대상이 되었을 때는 자발적이라고 보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리하여 보호처분하고 있어 성구매자에게 흔히 '너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협박과 아동·청소년들이 신고할 수 없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은 동의여부를 떠나 성착취 피해자로 간주하고 성인의 책임을 전적으로 묻는 형태의 법률로 개정되어야 하며, 처벌 또한 구속을 원칙으로 하여 수사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 범죄의 경우에는 구속이 무서워서라도 범의를 상실시키게 하는 처벌이 되어야 한다. 성매매의 경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경우도 현행과 같이 만 13세 이하로 두지 말고 피해아동·청소년과 동일하게 행해져야 한다.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한 경우 일벌백계의 의미에서 '손해배상'을 부과해야 한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남인순 의원, 김삼화

의원 등 발의)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통합개정안)되어 있으며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으며, 법무부의 반대로 1년이 넘도록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아청법 개정 공대위 랜딩 페이지 https://govcraft.org/campaigns/151

붙임자료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

제안이유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처음 성매매를 한 방식으로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59.2%를, '인터넷 카페·채팅'이 27.2%를 차지하였고, 가장 많이 이용했던 성매매 방식 또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67.0%를, 그 뒤를 이어 '인터넷 카페·채팅'이 27.2%를 차지하였음.[7)]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는 대부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인터넷을 통해 일어나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4조 제1항),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그러한 행위로 의심할 수 있는 부호, 문자, 음향, 음성, 화상 또는 영상 등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는 금칙어(문자열 필터링)에 대한 정기적 보완 및 관리·감독,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의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구체화하여야 함.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제13조제2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주요 경로로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이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아

6) 2017년 10월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에서 입법제안서 작성됨. 서순성, 박숙란, 강정은, 김수연, 김제현, 김현아, 라은정, 배수진, 신수경, 이혜온, 전수미, 차민정 변호사가 작성함.

7) 정현미·장명선·조진경·이기연·박숙란·김현아,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 79~80쪽, 국가인권위원회(2016. 10.)

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정보를 게시·제안·교환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해당 정보의 게시·제안·교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정보를 암시하는 문자·그림·사진·동영상·약어(略語)·은어(隱語) 등의 형태 정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임.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서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동의를 불문하고 간음·추행 등의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음. 본 법률이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특별법임을 고려한다면 해당 연령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의 경우 엄격히 처벌하고 해당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하여야 함. 이를 고려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보를 게시·제안·교환하는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정보를 유통시키며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중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포함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자는 사실상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자와 다름이 없고,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정보를 유통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알선영업행위를 하는 자와 같이 취급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정보를 유통하는 자를 제15조의 알선영업행위를 하는 자에 포함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당 조항의 개정이 요구됨.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정보 유통은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알선정보 제공과는 그 행위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 각 행위의 법정형에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검

토하여 제안하는 바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이용자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8] 등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조장하여 막대한 광고수익을 얻고 있음. 따라서 자신이 관리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이를 제의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17조제1항), 즉시 삭제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발견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이를 제의하는 정보를 삭제가 아닌 '차단'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에서 증거확보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조치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이용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이를 제의하는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제공할 것을 규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조치로 금칙어 관리가 있는데, 금칙어 관리의 경우 이용자는 약어나 문자열의 조합 등을 이용하여 쉽게 등록된 문자열을 우회할 수 있고, 온라인상에서는 주로 비속어, 줄임말, 신조어 등이 사용되므로 지속적인 금칙어에 대한 관리와 업데이트가 요구됨. 금칙어 관리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경우 적극적 필터링[9]을 요구하고 성인의 경우 소극적 필터링[10]을 요구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구체화할 필

8) 편의상 채팅 애플리케이션만을 기재하였으나, 개정안 제17조의2 및 관련 시행령안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국한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이용자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면 모두 적용됨.

9) 권리자들이 허락한 파일에 대한 정보를 DB로 만들어,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 허용하고 그 외엔 모두 차단하는 필터링 방식. 적법한 콘텐츠만 유통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10) 권리자들의 요청 등의 이유로 OSP가 필터링 되도록 설정해 놓은 파일에 대해서만 DB

요가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게임 이용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청소년의 게임 몰입과 중독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예방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고자,[11]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청소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음.[12] 반면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회원 가입 시 실명, 연령 확인이나 본인 인증 등의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고 있음.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방지하고, 왜곡된 성문화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불법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는 일반 국민을 보호하며, 추후 성매매, 성범죄 등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특정이 용이하도록 실명, 연령 확인, 본인 인증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서는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를 표시할 것을

를 구축하여 필터링을 실시하는 것. 인식기술과 DB 업데이트 주기에 따라 필터링 성능이 영향을 받게 됨. 새로운 콘텐츠나 변형 파일에 대해서는 적시 대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0879호 일부개정 2011. 07. 21.) 개정이유 참조

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5.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6.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7. 그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요구하고 있음(제17조제2항).[13]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특별히 처벌 경고문구표시 의무를 규정한 것은 P2P, 웹하드 등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업그레이드 및 다운그레이드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인의 장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위에 적시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의무와의 형평을 위하며 이용자들이 처벌 규정을 상기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이용자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처벌 문구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바,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처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고자 함.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14]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함.[15]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 법에 의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유통 경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5) 2013. 9. 6. 발의, 의안번호 673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참고.

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강력한 대처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8조 몰수 및 추징).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가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그러한 행위로 의심할 수 있는 부호, 문자, 음향, 음성, 화상 또는 영상 등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는 금칙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완 및 관리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방안을 연구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 제1항 각호 신설).

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성을 사기 위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보를 게시·제안·교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며, 그 대상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제2호 신설).

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이용자 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이를 제의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이용자 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이를 제의하는 정보를 발견할 경우 이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특정 이용자 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이를 제의하는 정보를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함(시행령안 제3조제1항제1호).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이를 제의하는 정보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시행령안 제3조제1항제2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의심되는 부호, 문자, 음향, 음성, 화상 또는 영상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금칙어 보완, 관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시행령안 제3조제1항제3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로그기록을 최소 1년간 보존하도록 함(시행령안 제3조제1항제4호). 이용자의 신고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인계할 의무를 규정함(시행령안 제3조제1항제5호).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이용자 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이를 제의하는 정보를 발견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16].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안 제67조제1항).

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이용자 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 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6) 안 제34조제2항제15호 신설 규정과 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규정이 모두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 과정에서 논의를 통해 택일되어야 함.

를 부과하도록 규정(안 제67조제1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이용자 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을 규정(시행령안 제3조의2 신설).

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이용자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보를 게시·제안·교환하는 행위에 관한 처벌 경고 문구를 표시할 것을 규정(안 제17조의2제5항, 시행령안 제4조제2항 신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안 제67조제1항).

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 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카.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신고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제15호 신설).

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 법에 정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안 제68조 몰수 및 추징).

신·구조문대비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 설 >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서비스 이용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그러한 행위로 의심할 수 있는 부호, 문자, 음향, 음성, 화상 또는 영상 등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는 금칙어에 대한 정기적인 보완 및 관리, 기술 제공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의 설치·운영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3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보 게시 행위 등)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보를 게시·제안·교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그림·사진·동영상·약어(略語)·은어(隱語)등 형태의 정보를 포함한다.

	②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 ② (생 략)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제1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 즉시 차단하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이용자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이용자간 대화서비스(문자, 음성, 화상 등의 수단을 불문하고 이용자간의 의사전달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제의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한다.[17]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이용자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제1항의 정보를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제1항의 정보를 즉시 차단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제1항의 정보를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8]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이용자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제1항의 정보를 발견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이용자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용자의 회원가입시 실명, 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9]
	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이용자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간 대화화면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20]
<신 설>	제18조의2(상습범)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14. (생 략) <신 설>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14. (현행과 같음) 1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다만, 해당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와 청소년 보호 책임자에 한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7조(과태료) ①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제67조(과태료) ① 제17조제2항 및 제17조의2제3항, 제4항,제5항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⑤ (생 략)	----------. ②~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8장 몰수 및 추징
	< 신 설 > **제68조(몰수 및 추징)**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 법에 의한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이 법에 의하여 몰수.추징된 금액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자활 및 생계를 위해 사용하도록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개정안
제3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	제3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대상성범죄 정보 발견을 위한 조치 등) ① 법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제17조의2제1항 정보를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을 참조한 조문으로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되, 어려울 경우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수정 반영 가능
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참조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1호 참조
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참조

	되는 온라인 자료 또는 제17조의2제1항 정보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 또는 제17조의2제1항 정보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 3. 이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대화 중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그러한 행위로 의심할 수 있는 부호, 문자, 음향, 음성, 화상 또는 영상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금칙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 관리하는 조치 4. 이용자가 온라인서비스를 접속 또는 사용한 기록을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조치 5. 이용자로부터 신고받은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인계할 때 취할 조치
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제17조의2제1항 정보로 판단하기 어려운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고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제17조의2제1항 정보를 발견하고 차단·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특정 이용자간 대화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이용자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대화서비스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대화서비스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21]
제4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 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 기준)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 설>	②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에 대한 처벌경고문구의 표시 기준은 별표 5[22]와 같다.

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3항 참조

2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는 별표 1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정보를 게시.제안.교환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

붙임자료 2)

십대여성인권센터 논평

‘원스토어의 채팅앱 및 소개팅앱에 대한 청소년 이용불가등급 결정을 열렬히 환영한다’

원스토어는 2019년 8월 19일 아동·청소년을 성착취(성매매)로 알선·유인하고 음란물 유통에 이용되고 있는 채팅앱 및 소개팅앱에 대하여 청소년 ‘이용불가등급’으로 연령등급 정책을 변경하였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원스토어의 적극적 조치를 열렬히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1. 2016년 여성가족부 성매매 실태조사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74.8%는 채팅앱과(37.4%) 랜덤채팅앱(23.4%)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아동·청소년을 성매수로 유인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채팅앱 및 소개팅앱을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2. IT기술을 매개로 한 성매매 산업에 아동·청소년이 대거 유인되고 그 피해의 심각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2019년 4월부터 일부 채팅앱/소개팅앱의 이용 연령 제한을 18세로 등록하고 실명 인증단계를 거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전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아 여전히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기반으로 한 채팅앱/소개팅앱들은 구글의 성인인증을 피해 원스토어로 대거 이동하여 운영하였다. 이는 채팅앱/소개팅앱들이 성매수에 알선·유인하는 주요 대상이 아동·청소년들이며, 성인인증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이들 채팅앱/소개팅앱들에게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불법 수익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정

책인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이러한 현실에 대해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기반으로 원스토어는 원스토어 내의 채팅앱/소개팅앱 102개를 전수조사하였다. 그 결과 원스토어는 이들 채팅앱/소개팅앱들이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여 이용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로 변경하기로 결정, 채팅앱/소개팅앱 운영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이용등급 변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판매 약관에 의거하여 원스토어 직권으로 등급을 변경하거나 판매 금지를 취한다는 적극적 조치의 입장을 밝혔고, 이를 2019. 8. 19. 부터 시행하였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원스토어 측의 이러한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지지하고 환영하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더 많은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란다.

4. 그러나 여전히 애플을 기반으로 한 앱스토어의 경우 채팅앱/소개팅앱의 청소년 이용불가등급이나 성인 인증단계가 없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관련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의 선도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진화·발전하고 있는 IT기술 매개의 성매매 산업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정부적 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등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자율적 선도 조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해당 법령에 의거하여 기업의 당연한 조치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붙임자료 3)

한국인 운영자에 의해 개설된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판매 다크웹 사이트의
국제공조사건 수사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유통 및 소지한 38개국에서 검거된 이용자 337명 중
223명이 한국인 이용자임이 밝혀졌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2019. 10. 16. 비트코인을 받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 유통한 최대 규모의 다크웹 사이트를 해외 32개국과 공조하여 수사하고,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 및 사용자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1. 경과

날짜	경과	세부내용
2015년 7월	다크웹 사이트 개설 및 운영	· 충남의 자택에 서버를 갖춰놓고 'Welcome To Video' 사이트를 통해 아동성착취 동영상 22만여 건을 유통함. · 2년 8개월간 불법 사이트를 운영. · 사이트는 이용자가 120만여명, 유료회원만 4073명에 달할정도로 규모가 크고 대부분 이용자가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짐. · 유료회원으로부터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받고 아동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하여 415비트코인(약 4억원)을 불법적으로 벌어들임.
2018년 3월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 검거	· 2017년 9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이 해당 사이트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한국 경찰청에 알리면서 수사 착수됨. · 아동·청소년성착취 영상물 유통 및 판매 사이트 운영자 손모 씨(23세) 검거 ·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

2019년 10월 16일	다크웹 사이트 이용자 검거	· 한국 경찰청은 운영자 검거 후, 각국에서 진행 중이던 사이트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사이트에 '홈페이지 개편 중(Rebuilding)'이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사이트가 작동하지 않도록 조치해 옴 · 운영자 검거 이후 32개국의 사이트 이용자의 검거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최종수사결과 발표 · 검거가 이루어진 곳은 영국, 아일랜드, 미국, 한국, 독일,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체코공화국, 캐나다 등.

2. 논평

2019년 10월 16일, 미국 법무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유통 및 판매했던 최대 규모의 다크웹 사이트 공조수사의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2018년 3월,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가 한국인으로 밝혀져 검거된 후에도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유통 및 소지한 38개국의 이용자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고 진행한 결과, 검거된 337명의 이용자 중 223명이 한국인 이용자임이 밝혀졌다.

사이버경찰청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유통 및 판매하며 이익을 거둔 운영자와 이용자를 검거하기 위해 공조수사에 협력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유통 및 소지한 혐의로 검거된 이용자의 65%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것은 현 한국 사회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소비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사회 인식과 분위기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미국 법무부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 법무부 홈페이지에 이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사용자들에 대한 기소 내용을 게시하였다. 사용자들의 연령은 20세부터 70세에 이르고 있었으며, 배포한 혐의로 18개월, 97개월, 121개월, 5년, 15년, 22년 등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는 것과 범죄 수익금은 몰수 추징되어 궁극적으로 불법 자금을 범죄 피해자에게 반환된다는 점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2018년 한국에서 검거된 사이트 운영자인 손씨(23세)는 겨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

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만을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아동·청소년성착취 영상물을 배포했다는 혐의만으로도 길게는 22년까지 형을 선고받은 미국에 비해 한국사회가 얼마나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사이트 운영자와 사용자들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고 허용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의 유통 및 판매가 비단 운영자나 이용자를 추적하기 어렵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인터넷 공간인 다크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에서부터 인터넷 사이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SNS, 개인 방송 등에서도 불법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홍보글과 불법 성매매 업소 사이트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판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요구 등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동안 십대여성인권센터를 비롯, 여러 단체들이 인터넷 상에서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물 유통 및 판매·소지, 성매수를 버젓이 제안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술적인 방어조치나 적극적 수사와 기소, 입법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나 한국 사회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사회가 성적 착취를 통해 불법적 수익을 극대화시키며 배를 불려왔던 불법 성착취 사이트들의 운영자들이나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상에서 안심하고 활개를 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버경찰청은 32개국과 공조 수사하여 검거가 어렵다고 알려진 다크웹 사이트도 이제 적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그러나 다크웹 사이트 뿐 아니라 우선 모든 이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 인터넷 사이트, SNS,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 개인 방송부터 모니터링하고 수사하라. 그동안 접근할 수 있는 이는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는 불법 성매매 업소 사이트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유통 사이트를 신고해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사조차 하지 않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왔던 사이버 경찰청 및 정부가 이러한 국제적으로 최대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유통시킬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해 왔던 것이다.

한국은 UN 아동인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권고를 받은 바 있으나, 여전히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와 성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

하고 있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와 같은 성착취, 성착취 영상물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광범위한 관계자들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과 사전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 상의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와 성착취 문제가 심각한 한국 사회가 가장 먼저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이 사안을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인식, 우선순위에 두고 IT 기술전문가를 포함한 독립적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법제도를 만들어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거된 한국인 223명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 결과를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할 것이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끝〉

2019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 릴레이 포럼

발 제 2

채팅 앱 특성과 유통실태 및 청소년 보호 가이드 라인

조 진 석(탁틴내일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부장)

채팅 앱의 유통실태 및 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 제언

조진석 부장(탁틴내일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 조사배경

○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청소년 조건만남, 성매매 등 불법·유해 행위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 랜덤채팅 앱은「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으며, **익명성·사적 대화공간·대화내용의 휘발성**으로 사전규제 및 단속·수사에 어려움
- 이에 청소년의 안전한 채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채팅 앱의 구조 및 기능 등 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언하고자 함

◈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 중 6명이 **채팅 앱**과 **랜덤채팅 앱**으로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남('16 성매매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건만남 근절을 위해 성매수자 처벌과 함께 사업자 수사 및 처벌강화(12.7%), **앱 이용 나이제한(8.7%)**을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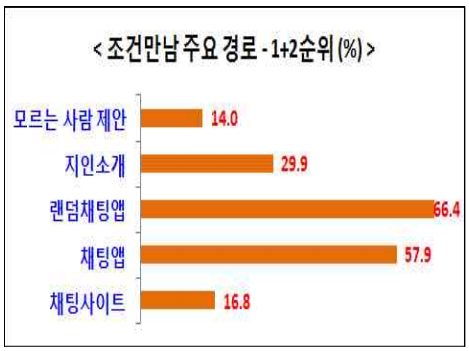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1차) '19. 7. 8 ~ 7. 26 / (2차) '19. 11. 4 ~ 11. 8

○ 조사대상 : 3개 전자소프트웨어유통망(ESD) 내 채팅 앱 687개

* 관련 검색어(채팅, 소개팅, 만남, 랜덤채팅, 데이트, 미팅 등)를 통해 전수

조사한 결과에 대해 앱명 검토 후 채팅 관련 앱을 정리

○ 분석대상 : 687개 앱 중 349개를 분석

* 구글플레이 129개, 애플앱스토어 93개, 원스토어 127개 / 338개는 분석대상 제외

** 1차 조사('19.7월)시 451개 앱이 분석대상이었으나, 업계 자율규제 강화 이후 102개 앱 감소

○ 조사항목

구분	분 류	항 목	비 고
설치 단계	**유 통 망**	· **구글플레이** : 안드로이드 · **애플앱스토어** : IOS · **원스토어** : 안드로이드 기반(통신사&네이버)	
	이용등급	· **청소년이용가** : 전체~16세 · **청소년이용불가** : 17~19세	
가입 단계	**회원관리**	· **회원/비회원**	본인확인 여부와 무관
	인증방법	· **본인인증** : 휴대전화 인증(이름+생일+성별+전화번호) – 이통3사 및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본인확인 · **미인증** : 익명/이메일[2]/기기인증[3] * 이메일 : 무료도메인 등 사용하면 익명 가능(해외SNS) * 기기인증 : 기기ID(자체) 및 전화번호 인증(국내포털)	선택 가능한 경우 → 가장 낮은 인증 선택 (사업자/포털연계SNS연계)
이용 단계	**대화상대 선택방식**	· **랜덤방식** : 사용자 목록 확인 불가 – 완전랜덤 : 대화상대를 특정할 수 없음 – 부분랜덤 : 가입정보 기반(ex:성별,연령대,지역 등) · **선택방식** : 이용자 목록에서 대화상대 선택 – 개별선택1 : 가입정보 기반 – 개별선택2 : 가입정보+단말기정보 기반	선택 가능한 경우 → '선택방식' 선택
	사업자 수익구조	· **광고수익** : 광고 시청(자율/강제) 또는 앱 설치/가입 등 · **사용자결제** : 유통망 내 결제시스템 이용 · **병행구조** : 광고수익+사용자결제	
채팅 내용 관리	**대화저장**	· **저장가능/캡쳐가능/저장불가**	대화 후 확인가능 여부
	대화신고	· **신고가능/신고불가**	대화 중 신고가능 여부

□ 조사결과

○ [표1]유통망별 대상구분

구 분	구글플레이	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	합 계
일반채팅	108	74	45	227
영상채팅	12	17	28	57
음성채팅	9	2	54	65
소 계	**129**	**93**	**127**	**349**
대상제외	109	142	87	338
합 계	**238**	**235**	**214**	**6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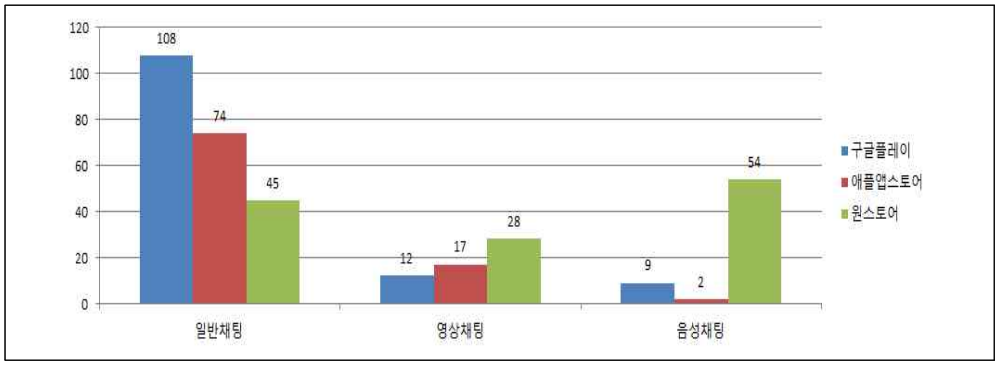

○ [표1-1]분석대상 제외사유

구 분	종 류	개수	대상제외 사유
조사 불가	실행오류	77	다운로드 가능하나, 설치·이용단계에서 오류 발생
	목록중복	33	최초 조사목록 수집시 중복 발생(동시수집)
	미운영	73	최초 조사목록 수집후 조사시 운영중지(서비스종료)
	소 계	183	
대상제외	외국어	13	사용언어가 외국어인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11	채팅과 유사한 게임·소셜 및 채팅용 부가서비스 등
	인터넷방송	8	인터넷방송
	메신저	10	전화번호나 서비스ID 기반 소통(카카오톡 등)
	외국인대상	7	언어공부, 여행 목적의 외국인 대화 서비스
	SNS	5	공개된 게시글과 댓글을 통한 소통(페이스북 등)
	기 타	10	배달앱, 베타테스트, 커뮤니티, 단순매칭(채팅기능 없음)
	소 계	64	
인증 제외	소개팅	91	가입과정에서 관리자가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 요구
합 계		338	

○ [표2]대상구분 기준 조사항목 비교

구 분			일반채팅	영상채팅	음성채팅	합 계
설치 단계	이용등급	청소년이용가	25	0	0	25
		청소년이용불가	202	57	65	324
		청소년이용불가비율	89.0	100.0	100.0	92.8
가입 단계	회원관리	회 원	59	10	2	71
		비회원	168	47	63	278
		비회원비율	74.0	82.5	96.9	79.7
	인증방법	본인인증	13	0	0	13
		미인증	214	57	65	336
		인증비율	5.7	0.0	0.0	3.7
이용 단계	대화상대 선택방식	랜덤방식	80	19	9	108
		선택방식	147	38	56	241
		선택방식비율	64.8	66.7	86.2	69.1
	사업자 수익구조	광고수익	64	6	58	128
		병행구조	146	45	7	198
		사용자결제	17	6	0	23
		광고수익비율 (병행구조포함)	92.5	89.5	100.0	93.4
합 계			**227**	**57**	**65**	**349**
채팅 내용 관리	대화저장	저장가능	151			
		캡쳐가능	41			
		저장불가	13			
		저장불가비율	6.3			
	대화신고	신고가능	126			
		신고불가	79			
		신고불가비율	38.5			
합 계			**205**			

* 영상채팅 앱(57개)과 음성채팅 앱(65개)은 대화저장 및 신고 기능이 없어 조사항목에서 제외(총122개)
* 일반채팅 앱 중 사용자가 없는 앱(5개)과 유료로만 대화가 가능한 앱(17개)은 조사항목에서 제외(총22개)
* 총 349개 앱 중 144개 앱 조사항목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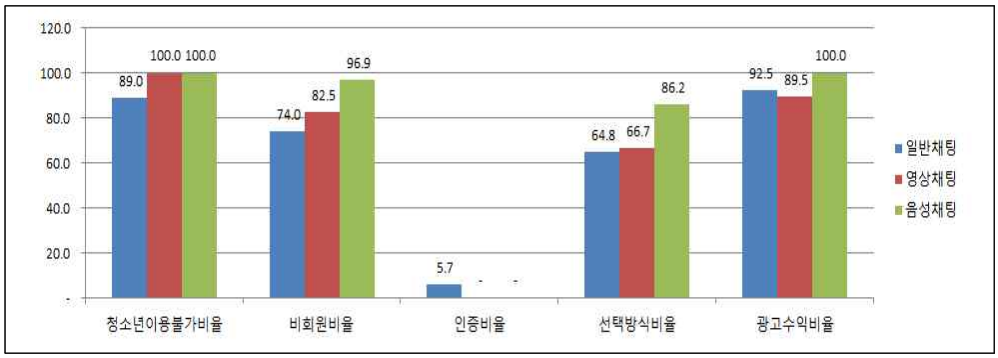

○ [표3]이용등급 기준 조사항목 비교

구 분			청소년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합 계	청소년이용불가비율
대상구분		일반채팅	25	202	227	89.0
		영상채팅	0	57	57	100.0
		음성채팅	0	65	65	100.0
		일반채팅비율	100.0	62.3	65.0	
가입 단계	회원관리	회 원	4	67	71	94.4
		비회원	21	257	278	92.4
		비회원비율	84.0	79.3	79.7	
	인증방법	본인인증	0	13	13	100.0
		미인증	25	311	336	92.6
		인증비율	0	4.0	3.7	
이용 단계	대화상대 선택방식	랜덤방식	16	92	108	85.2
		선택방식	9	232	241	96.3
		선택방식비율	36.0	71.6	69.1	
	사업자 수익구조	광고수익	13	115	128	89.8
		병행구조	12	186	198	93.9
		사용자결제	0	23	23	100.0
		광고수익비율 (병행구조포함)	100.0	92.9	93.4	
합 계			**25**	**324**	**349**	**92.8**
채팅 내용 관리	대화저장	저장가능	12	139	151	92.1
		캡쳐가능	8	33	41	80.5
		저장불가	4	9	13	69.2
		저장불가비율	16.7	5.0	6.3	
	대화신고	신고가능	11	115	126	91.3
		신고불가	13	66	79	83.5
		신고불가비율	54.2	36.5	38.5	
합 계			**24**	**181**	**205**	**8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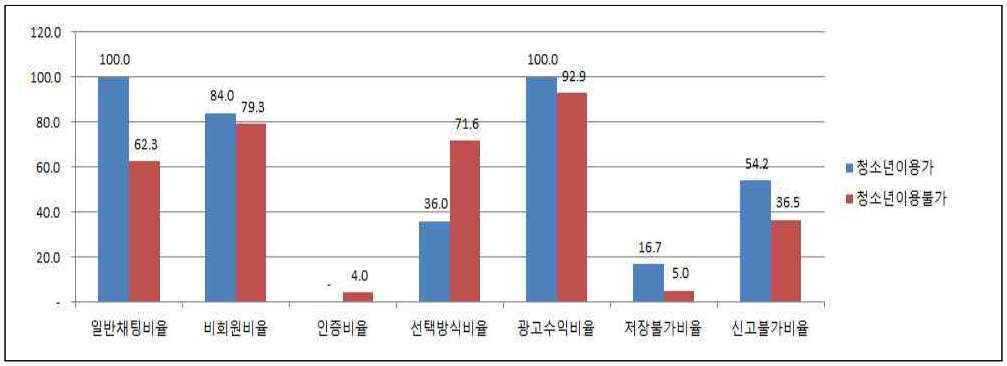

○ [표4]회원관리 기준 조사항목 비교

구 분			회 원	비회원	합 계	비회원비율
대상구분		일반채팅	59	168	227	74.0
		영상채팅	10	47	57	82.5
		음성채팅	2	63	65	96.9
		일반채팅비율	83.1	60.4	65.0	
설치 단계	이용등급	청소년이용가	4	21	25	84.0
		청소년이용불가	67	257	324	79.3
		청소년이용불가비율	94.4	92.4	92.8	
가입 단계	인증방법	본인인증	10	3	13	23.1
		미인증	61	275	336	81.8
		인증비율	14.1	1.1	3.7	
이용 단계	대화상대 선택방식	랜덤방식	22	86	108	79.6
		선택방식	49	192	241	79.7
		선택방식비율	69.0	69.1	69.1	
	사업자 수익구조	광고수익	14	114	128	89.1
		병행구조	49	149	198	75.3
		사용자결제	8	15	23	65.2
		광고수익비율 (병행구조포함)	88.7	94.6	93.4	
합 계			**71**	**278**	**349**	**79.7**
채팅 내용 관리	대화저장	저장가능	29	122	151	80.8
		캡쳐가능	19	22	41	53.7
		저장불가	3	10	13	76.9
		저장불가비율	5.9	6.5	6.3	
	대화신고	신고가능	26	100	126	79.4
		신고불가	25	54	79	68.4
		신고불가비율	49.0	35.1	38.5	
합 계			**51**	**154**	**205**	**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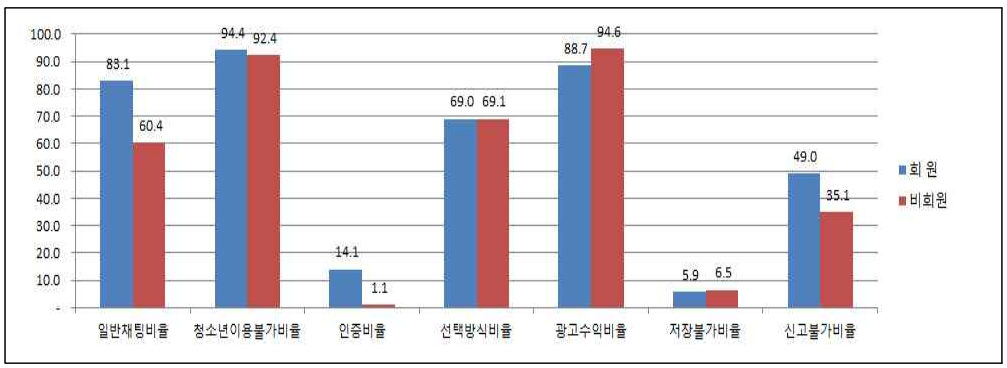

○ [표5]인증방법 기준 조사항목 비교

구 분			본인인증	미인증	합 계	인증비율
대상구분		일반채팅	13	214	227	5.7
		영상채팅	0	57	57	0.0
		음성채팅	0	65	65	0.0
		일반채팅비율	100.0	63.7	65.0	
설치 단계	이용등급	청소년이용가	0	25	25	0.0
		청소년이용불가	13	311	324	4.0
		청소년이용불가비율	100.0	92.6	92.8	
가입 단계	회원관리	회 원	10	61	71	14.1
		비회원	3	275	278	1.1
		비회원비율	23.1	81.8	79.7	
이용 단계	대화상대 선택방식	랜덤방식	1	107	108	0.9
		선택방식	12	229	241	5.0
		선택방식비율	92.3	68.2	69.1	
	사업자 수익구조	광고수익	0	128	128	0.0
		병행구조	11	187	198	5.6
		사용자결제	2	21	23	8.7
		광고수익비율 (병행구조포함)	84.6	93.8	93.4	
합 계			**13**	**336**	**349**	3.7
채팅 내용 관리	대화저장	저장가능	7	144	151	4.6
		캡쳐가능	4	37	41	9.8
		저장불가	0	13	13	0.0
		저장불가비율	0	6.7	6.3	
	대화신고	신고가능	6	120	126	4.8
		신고불가	5	74	79	6.3
		신고불가비율	45.5	38.1	38.5	
합 계			**11**	**194**	**205**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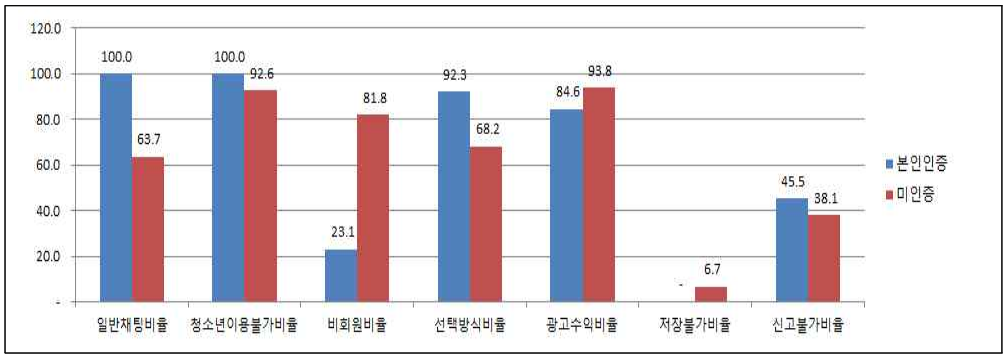

○ [표6]대화상대 선택방식 기준 조사항목 비교

구 분			랜덤방식	선택방식	합 계	선택방식비율
대상구분		일반채팅	80	147	227	64.8
		영상채팅	19	38	57	66.7
		음성채팅	9	56	65	86.2
		일반채팅비율	74.1	61.0	65.0	
설치 단계	이용등급	청소년이용가	16	9	25	36.0
		청소년이용불가	92	232	324	71.6
		청소년이용불가비율	85.2	96.3	92.8	
가입 단계	회원관리	회 원	22	49	71	69.0
		비회원	86	192	278	69.1
		비회원비율	79.6	79.7	79.7	
	인증방법	본인인증	1	12	13	92.3
		미인증	107	229	336	68.2
		인증비율	0.9	5.0	3.7	
이용 단계	사업자 수익구조	광고수익	56	72	128	56.3
		병행구조	40	158	198	79.8
		사용자결제	12	11	23	47.8
		광고수익비율 (병행구조포함)	88.9	95.4	93.4	
합 계			**108**	**241**	**349**	**69.1**
채팅 내용 관리	대화저장	저장가능	43	108	151	71.5
		캡쳐가능	18	23	41	56.1
		저장불가	6	7	13	53.8
		저장불가비율	9.0	5.1	6.3	
	대화신고	신고가능	42	84	126	66.7
		신고불가	25	54	79	68.4
		신고불가비율	37.3	39.1	38.5	
합 계			**67**	**138**	**205**	**6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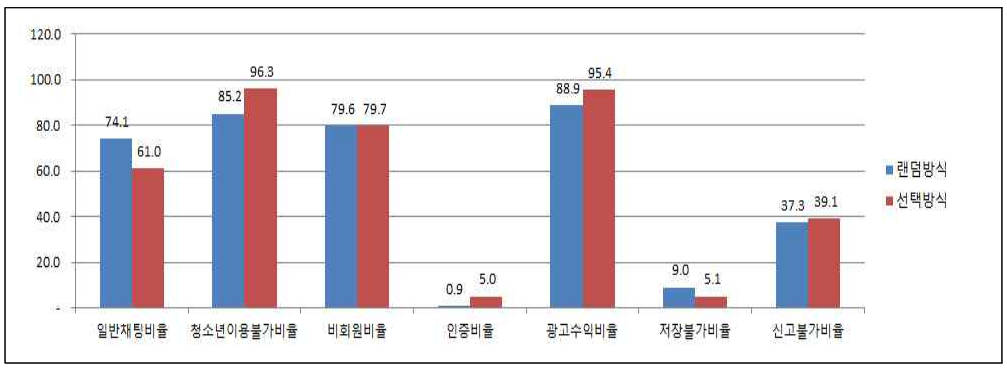

○ [표7]사업자 수익구조 기준 조사항목 비교

구 분			광고수익	병행구조	사용자결제	합 계	광고수익비율 (병행구조 포함)
대상구분		일반채팅	64	146	17	227	92.5
		영상채팅	6	45	6	57	89.5
		음성채팅	58	7	0	65	100.0
		일반채팅비율	50.0	73.7	73.9	65.0	
설치 단계	이용등급	청소년이용가	13	12	0	25	100.0
		청소년이용불가	115	186	23	324	92.9
		청소년이용불가비율	89.8	93.9	100.0	92.8	
가입 단계	회원관리	회 원	14	49	8	71	88.7
		비회원	114	149	15	278	94.6
		비회원비율	89.1	75.3	65.2	79.7	
	인증방법	본인인증	0	11	2	13	84.6
		미인증	128	187	21	336	93.8
		인증비율	0.0	5.6	8.7	3.7	
이용 단계	대화상대 선택방식	랜덤방식	56	40	12	108	88.9
		선택방식	72	158	11	241	95.4
		선택방식비율	56.3	79.8	47.8	69.1	
합 계			**128**	**198**	**23**	**349**	**93.4**
채팅 내용 관리	대화저장	저장가능	42	109	0	151	100.0
		캡쳐가능	11	30	0	41	100.0
		저장불가	6	7	0	13	100.0
		저장불가비율	10.2	4.8		6.3	
	대화신고	신고가능	34	92	0	126	100.0
		신고불가	25	54	0	79	100.0
		신고불가비율	42.4	37.0		38.5	
합 계			**59**	**146**	**0**	**20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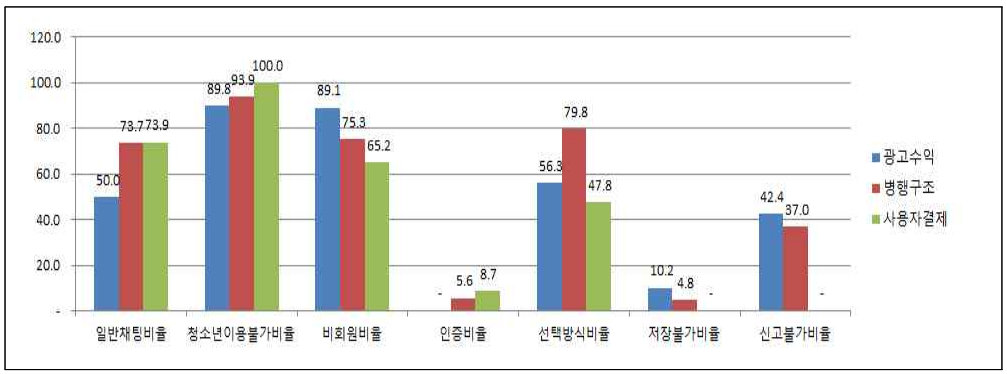

○ [표8]대화저장(일반채팅) 기준 조사항목 비교

구 분			저장가능	캡쳐가능	저장불가	합 계	저장불가비율
설치 단계	이용등급	청소년이용가	12	8	4	24	16.7
		청소년이용불가	139	33	9	181	5.0
		청소년이용불가비율	92.1	80.5	69.2	88.3	
가입 단계	회원관리	회 원	29	19	3	51	5.9
		비회원	122	22	10	154	6.5
		비회원비율	80.8	53.7	76.9	75.1	
	인증방법	본인인증	7	4	0	11	
		미인증	144	37	13	194	6.7
		인증비율	4.6	9.8	0.0	5.4	
이용 단계	대화상대 선택방식	랜덤방식	43	18	6	67	9.0
		선택방식	108	23	7	138	5.1
		선택방식비율	71.5	56.1	53.8	67.3	
	사업자 수익구조	광고수익	42	11	6	59	10.2
		병행구조	109	30	7	146	4.8
		사용자결제	0	0	0	0	
		광고수익비율 (병행구조포함)	100.0	100.0	100.0	100.0	
채팅 내용 관리	대화신고	신고가능	101	23	2	126	1.6
		신고불가	50	18	11	79	13.9
		신고불가비율	33.1	43.9	84.6	38.5	
합 계			151	41	13	205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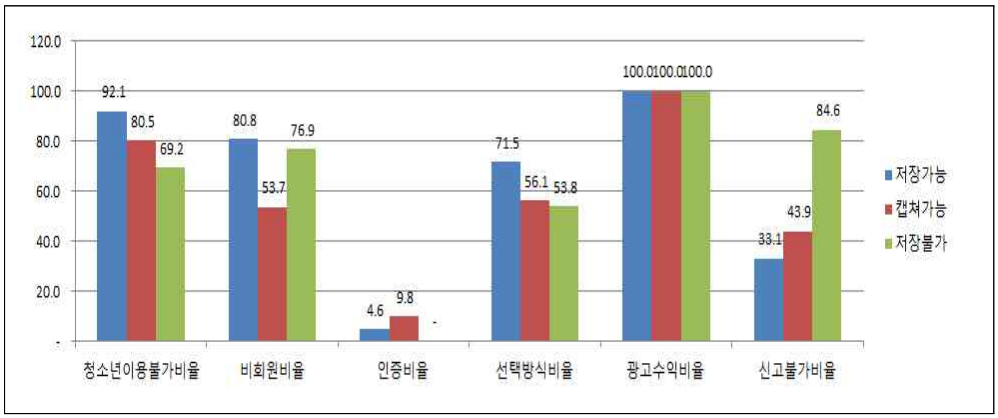

○ [표9]대화신고(일반채팅) 기준 조사항목 비교

구 분			신고가능	신고불가	합 계	신고불가비율
설치 단계	이용등급	청소년이용가	11	13	24	54.2
		청소년이용불가	115	66	181	36.5
		청소년이용불가비율	91.3	83.5	88.3	
가입 단계	회원관리	회 원	26	25	51	49.0
		비회원	100	54	154	35.1
		비회원비율	79.4	68.4	75.1	
	인증방법	본인인증	6	5	11	45.5
		미인증	120	74	194	38.1
		인증비율	4.8	6.3	5.4	
이용 단계	대화상대 선택방식	랜덤방식	42	25	67	37.3
		선택방식	84	54	138	39.1
		선택방식비율	66.7	68.4	67.3	
	사업자 수익구조	광고수익	34	25	59	42.4
		병행구조	92	54	146	37.0
		사용자결제	0	0	0	
		광고수익비율 (병행구조포함)	100.0	100.0	100.0	
채팅 내용 관리	대화저장	저장가능	101	50	151	33.1
		캡쳐가능	23	18	41	43.9
		저장불가	2	11	13	84.6
		저장불가비율	1.6	13.9	6.3	
합 계			126	79	205	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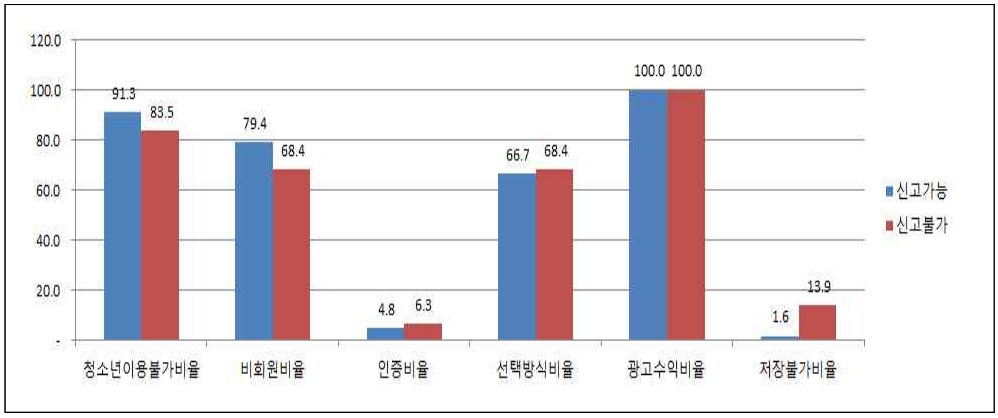

□ 채팅 앱 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 제언

○ 설치단계

- 청소년이용가 일반채팅 앱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부여 필요

· 전체 앱의 평균 회원 관리 비율은 20.3%, 평균 인증 비율은 3.7%로 대다수 앱이 회원 관리와 사용자 본인확인 기능이 없음

* (회원관리비율)청소년이용가 16.0% < 청소년이용불가 20.7%

* (본인확인비율)청소년이용가 0.0% < 청소년이용불가 4.0%

⇨ 청소년이용가 앱이 청소년이용불가 앱보다 더 안전하지 않음.

· 또한 영상채팅과 음성채팅은 3개 유통망 모두 청소년이용불가로 유통되고 있는데, 익명으로 이용 가능한 청소년이용가 일반채팅도 같은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 중 4개 앱은 ① 사용자 본인확인 기능이 없으며 ② 회원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도 ③ 채팅 중 문제 발생 시 관리자에게 신고가 불가능하고 ④ 채팅 중 화면 캡쳐 불가 및 채팅 후 대화내용이 삭제되어 외부신고 또한 불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음

- 유통망 간 앱 이용등급 분류심사 협조체계 구축

· 동일한 앱에 대해 유통망별로 이용등급이 서로 다른 4개의 앱이 확인됨.(청소년이용가/청소년이용불가) 같은 사업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같은 이용등급이 부여되도록 조정 필요

○ 가입단계

- 회원관리를 하지 않는 앱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부여 필요

· 회원관리를 하지 않는 앱은 총 278개로 전체의 7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앱이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

음

- 사업자의 입장에서 수익구조를 고려했을 때 광고 시청의 빈도수를 늘리기 위해 사용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도록 회원가입 절차를 일부러 두지 않는 것으로 추측됨
  * (광고수익비율,병행구조포함)회원관리없음 94.6% > 회원관리있음 88.7%
  * (1차조사 대비)전체 앱 102개 감소, 기존 앱 중 회원 관리 중단 36개 증가
- 사업자에게 회원관리를 강제할 수 없으나 악의적인 사용자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회원관리를 하지 않는 앱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도록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부여가 필요함

- 사업자가 사용자 본인인증 절차를 도입한 앱의 청소년이용가 등급 부여 필요

- 모든 채팅 앱은 사적 대화공간이므로 청소년 성매매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함. 그렇지만 사용자 본인인증을 강제하기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기 위한 법률적 조건이 현재로서 충분치 않음
- 또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지인 기반의 메신저 외에 익명의 상대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채팅 앱에 대해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면(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이 현재의 랜덤채팅 앱과 유사한 새로운 소통창구를 찾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사업자가 사용자 본인인증 절차를 도입한 13개 앱 중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된 6개 앱(ex:결혼,재혼(돌싱),중년 등)을 제외한 7개 앱에 대해서는 청소년이용가 등급을 부여하여 청소년도 랜덤채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함
  * (1차조사 대비)본인인증 절차가 없던 102개 앱만 감소

○ 이용단계

- 대화상대를 특정하여 선택하는 앱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부여 필요

- 채팅 앱은 지인 기반의 메신저와 다르게 익명의 상대와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대부분의 앱은 처음부터 오프라인 만남을 목

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측됨

- 전체 앱 중 프로필(성별, 연령, 지역 등)이 표기된 사용자 목록에서 대화상대를 선택하는 방식은 241개(전체 대비 69.1%)이며, 그 중 단말기의 위치정보까지 포함된 앱은 129개(전체 대비 37.0%)로 조사됨

  * 완전랜덤(대화상대를 특정할 수 없음) 48개 < 부분랜덤(가입정보 기반_성별 등) 60개

  < 개별선택1(가입정보 기반) 112개 < 개별선택2(가입정보+단말기정보 기반) 129개

- 완전랜덤 방식 채팅 앱의 경우 사용자 이용 패턴을 보면 ① 최초 자신의 성별을 밝히거나 상대의 성별을 묻고(악의적인 사용자는 곧장 성매매 제안) 이성이라고 밝히면 ② 연령과 ③ 사는 지역을 묻고 ④ 이후 상대의 신상을 알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⑤ 오프라인 만남을 유도해나가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음.
- 그러나 부분랜덤 방식은 성별 확인 과정이 생략되고(이성 선택 후 랜덤), 개별선택1 방식은 연령·지역 확인 과정이 생략되고, 개별선택2 방식은 나아가 상대방의 현재 위치(사용자와의 상대거리)와 최근 접속시간까지 표기되어 랜덤채팅이라는 말이 무색하고 오프라인 만남을 위한 사전정보가 이미 사용자 목록에 표기되어 있음
- 또한 일부 앱은 닉네임 등록 시 금칙어를 설정, 필터링하고 있지만 이후 자연어로 작성되는 프로필을 통해 접속 의도를 드러내고 있어 청소년 조건만남, 성매매 등의 불법·유해행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밖에 없음
- 선택방식 앱 241개 중 앞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부여를 언급한 앱을 제외하면(청소년이용가, 회원관리 없음) 총 38개의 앱이 해당되며, 해당 앱은 모두 익명 가입이 가능하고 만남이 용이한 옵션(메세지 다중발신 등)에 대해 사용자의 결제를 유도한다는 공통점이 있음(현재 38개 모두 청소년이용불가)

- 앱 내 불법·유해광고 신고 및 광고철회 캠페인 실시

- 모든 채팅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광고 수익과 콘텐츠 판매

의 2가지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 있음.

* 광고 수익 : 앱 내부에 광고 게재, 무료 대량배포로 수익 얻음
* 콘텐츠 판매 : 앱 무료 배포 후 콘텐츠·아이템 판매로 수익 얻음

- 자체 조사에 따르면 채팅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사업자가 직접 앱을 개발·운영하거나, 개발사에서 제작된 앱을 구입하여 운영함. 후자의 경우 소스 프로그램 제공은 2~3백만원, 앱 등록 및 유지보수는 8~10백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음
- 이 중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는 콘텐츠 판매 앱에 비해 오랜 기간 앱을 운영하기 보다는 단기간에 마케팅에 집중하여 투자비용 회수와 함께 수익을 얻는 것으로 추측됨

  * (운영기간)1년 미만 108개/ 2년 미만 130개/4년 미만 59개/4년 이상 52개
- 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업자는 사용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도록 까다로운 절차(본인확인, 회원가입)를 없애고 가급적 대화상대를 특정하여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앱을 제작함. 또한 ① 앱 이용 내내 사용자에게 배너광고를 노출하거나 ② 특정 기능(성별 선택, 대화 시도 등) 실행 시 동영상 광고 시청을 강제하고 ③ 구매력이 없는 사용자를 위해 광고주 사이트 가입·앱 설치를 유도하기도 함
- 이러한 앱에 게재된 광고를 살펴보면 불법광고와 청소년유해광고도 포함되어 있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신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 불법광고 : 불법도박, 불법의약품 판매, 성매매 후기 사이트 등
  * 청소년유해광고 : 청소년유해매체물(성인용품 판매), 성인웹툰 등
- 또한 신고와 더불어 광고대행사를 통해 게재되는 대기업 광고(금융, 가전, 통신 분야 등)를 분석하고 해당 광고주에게 자사의 광고가 게재되는 채팅 앱의 유해성에 대해 피력하고 광고를 철회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실시하는 노력 또한 필요함

○ 이상에서 언급되지 않은 채팅 앱은 총 349개 중 4개 앱이며, 해당 앱은 ① 회원관리를 하는 ② 부분랜덤 방식의 채팅 앱으로 ③ 사용자 결제로 수익을 얻는 ④ 2년 이상 운영 중인 앱이라는 것이 공통점으로 나타남(현재 모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2019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 릴레이 포럼

발 제 3

사적채팅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국가별 대응

Thomas Muller(ECPAT International Deputy Executive)

ecpat
END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SEOUL, 28 NOVEMBER 2019
CRC30 YEAR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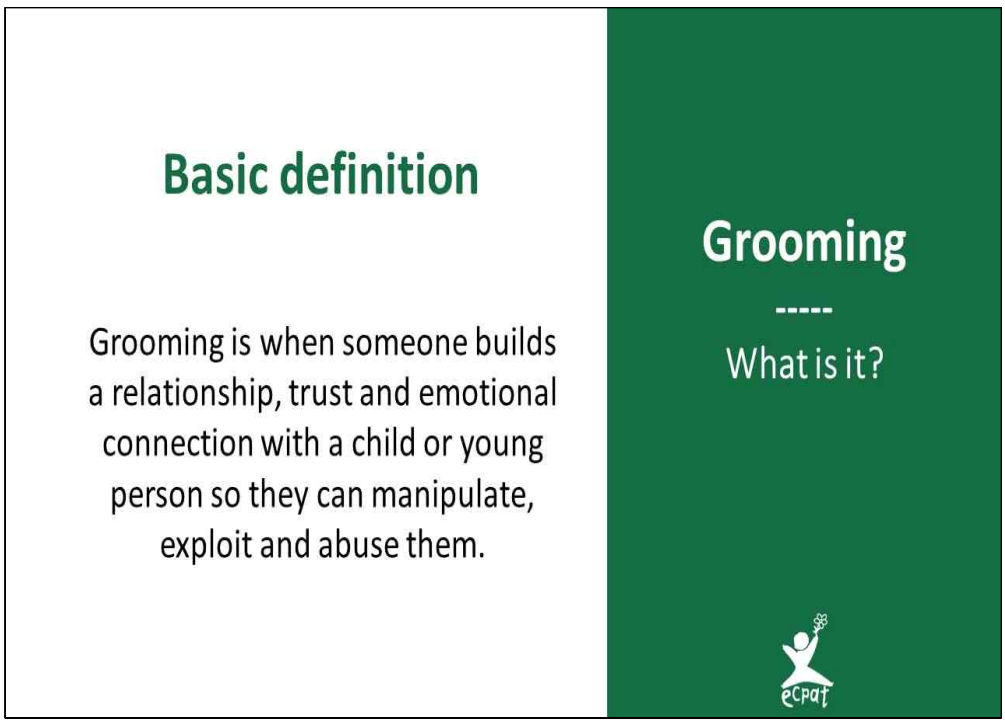
Basic definition
Grooming is when someone builds a relationship, trust and emotional connection with a child or young person so they can manipulate, exploit and abuse them.
Grooming

What is it?
ecpat

Basic definition

Online Grooming for sexual purposes is the process of establishing/building a relationship with a child through the use of the internet or other digital technologies to facilitate either online or offline sexual contact with a child.

Acts of online grooming are not to acts where a physical, in-person meeting has been attempted and/or occurred but also applies to acts conducted online.

Online Grooming

What is it?

ECPAT

- Contacts are motivated by sexual interest in children and/or financial gain
- Contact can be made randomly (e.g. send out mass friend requests and then hone in on the few that connect)
- Contact can be targeted: Pre-assessment of on open profiles followed by bespoke individual approach
- Contact is initiated online through chatrooms, social media, gaming sites a.o.

Making Contact

Initiating the Grooming process

ECPAT

- Grooming usually involves building an emotional connection with the victims and sometimes its peers/community to gain trust.
- Grooming behaviors leverage on vulnerabilities such as self-confidence, parental control or others
- They speak to the needs of the children, e.g. through giving attention, gifts, sense of acknowledgement (e.g. agreeing to everything)
- Progressively sexual, secretive, isolating, blaming and manipulative

Modus Operandi

Characteristics of Grooming

Results of Grooming

What happens next?

Corruption of children:

Each Party shall take the necessary legislative or other measures to criminalise the intentional causing, for sexual purposes, of a child who has not reached the age set in application of Article 18, paragraph 2, to witness sexual abuse or sexual activities, even without having to participate.

Lanzarote Convention

Article 22

ecpat

Solicitation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Each Party shall take the necessary legislative or other measures to criminalise the intentional proposal,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of an adult to meet a child who has not reached the age set in application of Article 18, paragraph 2, for the purpose of committing any of the offenc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paragraph 1.a, or Article 20, paragraph 1.a, against him or her, where this proposal has been followed by material acts leading to such a meeting.

Lanzarote Convention

Article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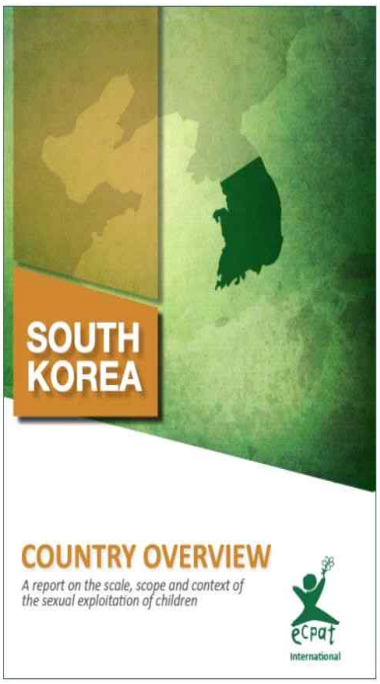

South Korea

Grooming needs to be Criminalised:

Grooming is the gateway crime committed to get access to children with the purpose of preparing their sexual exploi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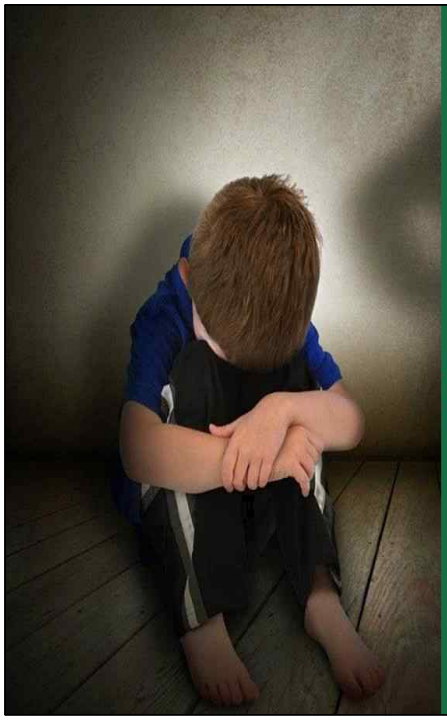

The messages we send to victims if Grooming is not criminalized

---

- The power imbalance is reinforced
- Grooming behavior is encouraged
- Perception is created that victims are to be blamed for failing to say no or refusing to engage in the sexual conduct.

What needs to be done

What you can do

- Advocate for stronger legal framework that criminalises the act of (online) grooming for sexual purposes;
- Advocate for better resources for law enforcement, such as dedicated capacity and tools, to tackle the issue of online grooming;
- Advocate and cooperate with the private sector, such as Internet Service Providers, to implement measures to provide safe online environments for children;
- Educate and raise awareness about online grooming;
- Conduct research and collect relevant information to enhance understanding about the issue of online grooming;
- Report when you are aware of a situation where a child is targeted by groomers online;
- Provide support and care for victims.

ecp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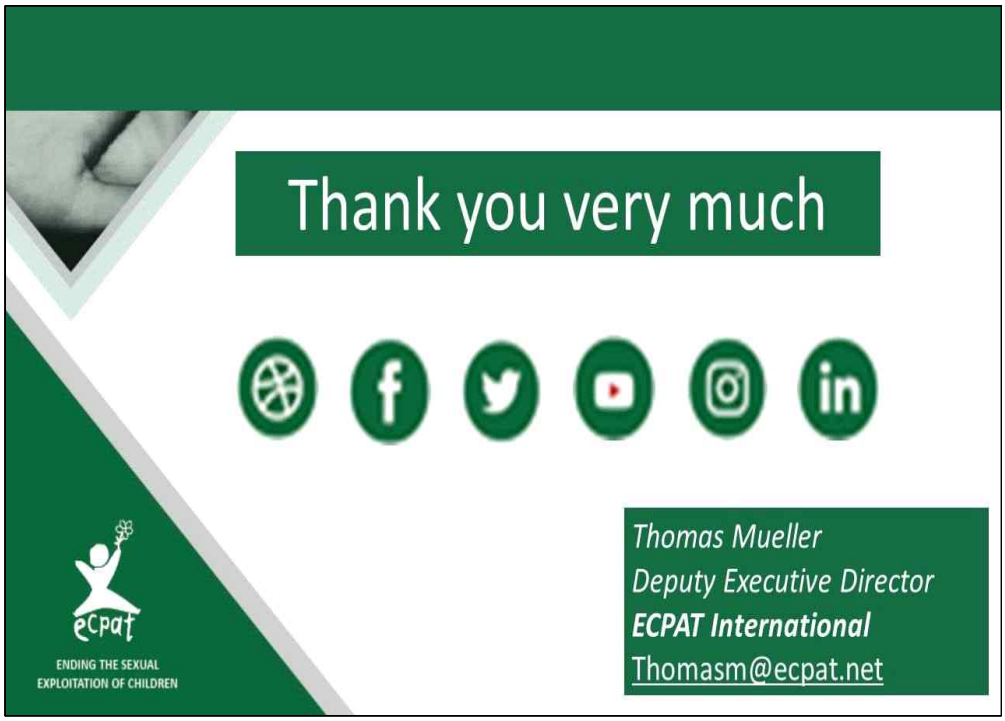
Thank you very much
ecpat
END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Thomas Mueller
Deputy Executive Director
ECPAT International
Thomasm@ecpat.net

ecpat
아동 성 착취
근절
SEOUL, 28 NOVEMBER 2019
CRC30 YEAR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탁틴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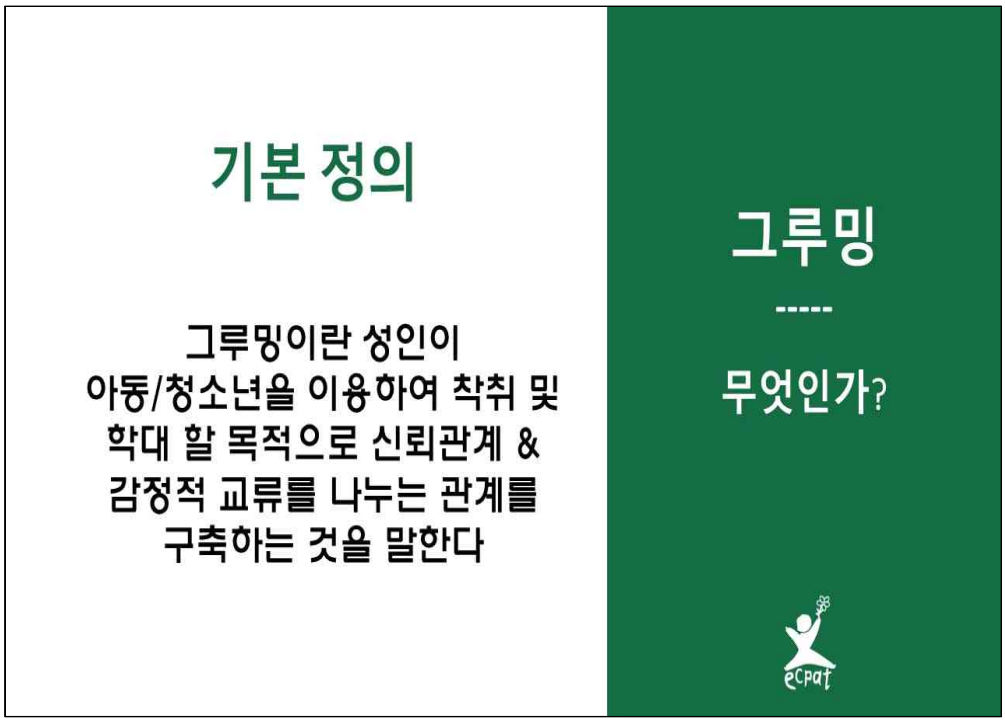
기본 정의
그루밍이란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착취 및
학대 할 목적으로 신뢰관계 &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그루밍

무엇인가?
ecpat

기본 정의

성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은 인터넷 혹은 다른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아동과 온라인&오프라인 상에서의 성적인 접촉을 위해 아동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온라인 그루밍 행위는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이 시도되거나 행해지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만 접촉한 것도 포함한다

온라인 그루밍

무엇인가?

- 아동으로부터 성적 만족감 혹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접근
- 아동과의 접촉은 무작위적일 수 있다 (예: 단체 친구요청을 보낸 후 응답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
- 특정 대상을 정하고 접촉하는 경우: 공개 프로파일을 통해 정보를 알아낸 후 그에 맞추어 접근
- 채팅방, SNS, 게임 사이트 등을 통해 접근이 이루어 진다

아동과의 접촉

그루밍의 시작

- 대부분의 그루밍은 피해자 혹은 피해자 주변인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하여 감정적 교류관계를 만들어낸다
- 그루밍은 아동의 자존감, 부모님과의 관계 등 취약점을 이용하여 영향을 발휘한다
- 그루밍 가해자는 관심을 가져주거나, 선물을 사주거나, 인정을 해주는 등 아동의 필요에 맞춰 대해준다 (예: 아동의 하는 모든 일에 동의해 줌)
- 점차 은밀하고 성적이며 아동에게 책임을 돌리는 주변과 단절된 관계로 변한다

작업 방식

그루밍 범죄의 특성

그루밍의 결과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다른 세상인양
취급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둘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ecpat

아동의 순수성 파괴:

각 당국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제18조 2절에서 협약된 나이를 지나지 않은 아동에게 성행위 혹은 성학대를 목격시키는 것을 (아동이 성행위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범죄화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마땅한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란사로테
협약

제 22조

ecpat

성적인 목적의 아동 유도행위:

각 당국은 성인이 제 18조 2절에서 명시된 나이를 넘기지 않은 아동과 만나 제 18조 1절a 혹은 제 20조 1절a에 명시된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정보 혹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만남을 권유하고, 그를 위한 행동을 취한 행위를 범죄화 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마땅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란사로테 협약

제 2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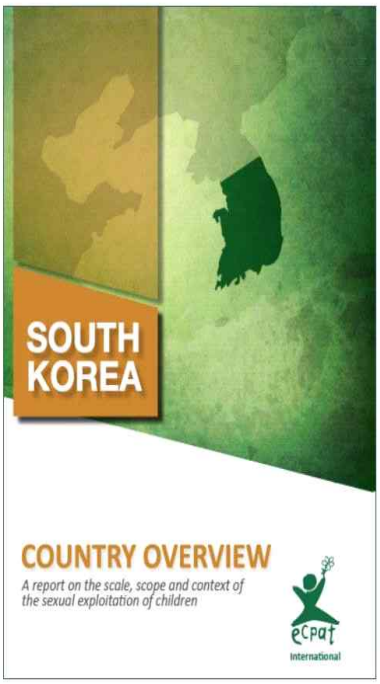

대한민국

그루밍은 범죄화 되어야 한다:

그루밍은 아동 성착취를 저지르기 위해 아동에게 접근하는 단계 범죄(gateway crime)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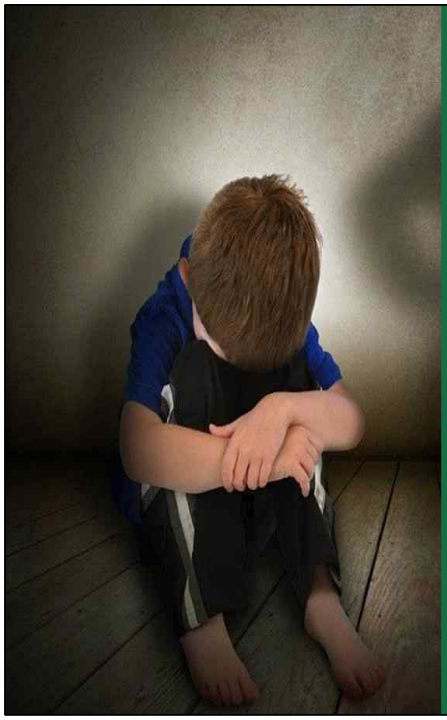

그루밍이 범죄화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보내는 메세지

- 권력 불균형/불평등의 강화
- 그루밍 행위 조장
- 피해자가 성행위를 거절하지 못한 것을 비난하는 문화 생성

이루어져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 성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제재할 수 있는 더 강한 법체계 확립을 위한 활동
- 온라인 그루밍 근절을 위한 법 집행의 강화를 위한 지지활동
- 인터넷 서비스 회사 등 민간 부문과의 협조 및 지지를 통해 아동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
-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교육과 인식개선
- 온라인 그루밍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활동 및 관련정보 수집
- 아동에 대한 온라인 범죄활동을 목격하였을 때 신고
- 피해자를 위한 보호 및 지원

ECP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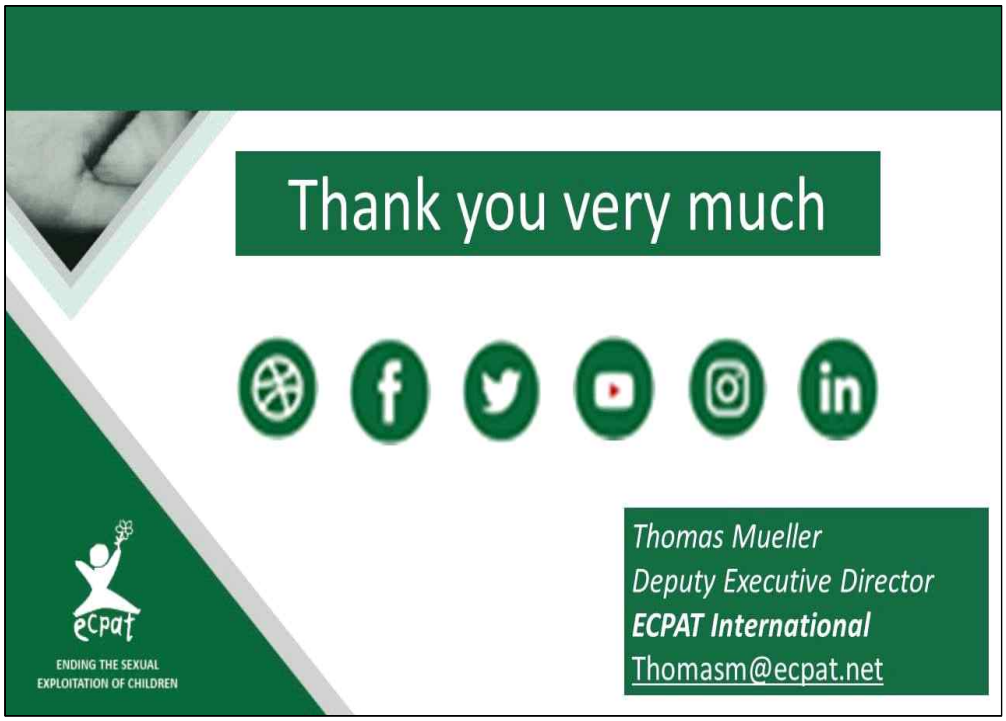
Thank you very much
ecpat
END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Thomas Mueller
Deputy Executive Director
ECPAT International
Thomasm@ecpat.net

2019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 릴레이 포럼

토 론 1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본 채팅 앱

박 소 명
(경인교육대학교 교사-교대생 전문적 학습공동체 G.L.S 회장)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본 채팅 앱

박 소 명
(경인교육대학교 교사-교대생 전문적학습 공동체 G.L.S 회장)

Ⅰ. 채팅앱의 긍정적 기능

1. 흥밋거리 제공, 시간을 보내는 수단

채팅 앱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심심해서', '시간 때우기 용'인 경우가 많다. 모르는 사람과의 영양가 없는 대화가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자체가 유희를 주기도 한다.

2.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경우에는 다양한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많다.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수능 공부하는 고3들은 주기적으로 서로의 공부계획을 확인해주거나 취업준비생들은 취업 정보나 팁들을 공유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나 고충들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익명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마음의 안정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3. 또래간의 친목을 위한 모임

청소년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하는 이유는 친목을 다지기 위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또래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은 오프라인에서 충족되지 못한 소속의 욕구 혹은 관계의 욕구를 온라인에서 다른 청소년과의 관계로 충족하고자 한다.

Ⅱ. 채팅 앱의 부정적 기능

1. 접근의 용이성

몇 채팅 앱은 이성간의 만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인 인증이 필요하지만 성인 인증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채팅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누구나 채팅을 할 수 있다. 인터넷의 랜덤채팅도 별다른 제재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채팅 앱을 이용해 쉽게 성매매에 빠지게 된다.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2. 익명성으로 인한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적 판단력이 떨어짐

오프라인 속에서는 타인인 '나'를 보고 있다는 인지 때문에 자신의 말과 행동을 자체적으로 검열한다. 하지만 채팅 사이트 혹은 앱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프라인에 비해 낮은 도덕성 수준을 보일 수 있다. 이는 채팅을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오프라인보다 죄의식 없이 성매매를 할 가능성이 크다.

3. 유연한 정체성 표현의 가능

실제 삶 속에서 타인에게 비춰지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채팅을 통해 드러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속의 어떤 개인은 소심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내지만 채팅에서의 자신은 무척 적극적이고 활발하거나 심지어 상대방과 험한 말을 주고받거나 음담패설을 나눌 수 있다.

4. 공개적인 SNS혹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팅 앱은 95% 이상 이성적인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이성적 만남뿐만 아니라 성매매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 채팅 앱들을 통해 청소년들도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몇

성인은 성매수자가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성구매를 하고자 한다.

Ⅲ.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를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

1. 아동 청소년이 성매매로 빠지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법이나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채팅 앱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더라도 실제 만남이나 성매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 청소년에게도 채팅은 단순한 유희거리이며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채팅을 통한 성매매로 이어지는 아동청소년들의 공통적 특징은 원만하지 못한 가족과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에서 학대받거나 소외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가족 내부의 일은 가족이 알아서 한다'라는 가족 중심 문화, 입시 중심의 경쟁주의 등으로 인해 소외된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기관이나 제도가 부족하다. 가정에서 소외되거나 학대를 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교사나 사회복지사, 혹은 관련 부처 공무원이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권한 없거나 약하다.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선별적인 관심이 아니라 전체 청소년에 대한 포괄적인 관심과 예방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성윤리의식을 기를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이 미흡하다.

본인은 초중고 재학시절, 학교에서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위험성 그리고 윤리적으로 얼마나 바람직하지 못한지 자세하게 배워본 적이 없다. 단순히 성 지식에 대해 배우고, 성매매는 나쁘다 정도로 배우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정에서 받지 못한 실질적인 성교육을 공교육에서 채워주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에서는 그러한 면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성매매 방지에 대한 논의가 복지 혹은 법규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3. 채팅 앱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성매매 단속이 실제적으로 불가한 상황

청소년 성매매 당사자들이 밝히지 않은 이상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는 적발하기 어렵다. 성인 간의 성매매도 단속하기 어려운데 청소년 성매매는 더욱 음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운이 좋게 성매매로 의심되는 현장을 포착한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면 처벌하기가 어렵다.

4. 성매매를 행하는 아동청소년은 모두 피해자라는 인식이 법에 부족하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의사가 자발인가 비자발인가에 따라 자발적인 성판매자는 성매매자로 처벌되지만, 비자발적인 성판매자는 피해자로 분류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하는 경우 과연 자발과 비자발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성매매를 위해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알선, 권유 등 강요되지 않으면 모두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보는 것으로 볼 때 정말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이든, 강요당하여 성매매를 했던 청소년이든 모두 사회적, 법적, 교육적 제도를 갖추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 생긴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Ⅳ. 청소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채팅 앱 및 청소년 성매매 규제 방안

1. 채팅 앱의 성인 인증 연령 상향 조정 (만 18세가 아닌 만 19세)

✓ 현재 채팅 앱들은 성인 인증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 이성적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채팅 앱들은 만 18세 이상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상 투표권을 인정받는 만19세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채팅 앱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랜덤채팅(ex:00라이브)에도 성인 인증 의무화

✓ 인터넷의 랜덤채팅은 성인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사이트가 많다. 따라서 이에 성인 인증을 의무화 하여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청소년 성매매시 성인 성구매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처벌은 낮은 수위의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처벌 규정의 하한을 상승시켜 벌금 혹은 집행유예 등으로 관대하게 끝내서는 안 된다. 특히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비록 성매매시 성 판매자가 청소년임을 몰랐을 지라도 동일하게 처벌해야 청소년을 성매매 행위로부터 구제할 수 잇을 것이다.

4. 비자발적, 자발적 청소년 성매매자라는 구분하는 법령 없애기

✓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비자발적 청소년 성매매자는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지발적 청소년 성매매자는 대상아동 청소년으로 규정하여 대상아동청소년은 보호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다. 하지만 청소년 성매매의 매커니즘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처음엔 강요로 시작되었지만 어느새 자발적이게 될 수 있고, 피해자였던 아동청소년이 가해자가 되어 다른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아동청소년과 대상 아동청소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을 없애고 모두가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보호

지원 서비스를 받게 해야 한다.

✓ 성매매 행위와 관련된 모든 아동청소년이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지원을 받아야 마땅하다. 단,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강력범죄(절도, 강도, 방화, 상해)등이 발생했다면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처분은 따로 받아야 한다.

5. 교육제도에서도 성윤리의식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및 정책 개발

✓ 복지, 법제 측면에서만 청소년 보호가 논의되고 있는 점이 아쉬웠다. 교육, 복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동 청소년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재량활동의 보건 교육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혹은 학교 자체적으로 외부강사를 섭외하여 교육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다. 성윤리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이 깨어날 수 있도록 성교육 시수를 확대하는 양적인 측면과 성교육 내용을 단순 성 지식에서 벗어나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질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성 교육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

6. 청소년이 성매매를 하지 않아도 불안한 가정환경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 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원인은 성매매 이외에는 집을 떠난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주거, 일자리, 교육 등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동 청소년이 성매매를 하지 않아도 자립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한다.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가 있더라도 대부분은 일시적인 보호 정도에 그치고 대부분은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청소년이 가출을 하게 된 원인이 가정에 있다면 이러한 조치는 결국 청소년이 다시 성매매로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7. 가출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 확충

✓ 가출 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으면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끼리 써클을 만들고 결국 성매매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가출 청소년을 위한 센터를 만들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출 청소년이 성매매로 빠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가출 청소년이 처한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기관이어야 한다.

8.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 강화

✓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은 가출 청소년이 가출하기 전까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단순한 상담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다. 가족중심문화로 인해 교사들이 청소년의 불안한 가정환경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며 법적 권한도 없다. 따라서 학교 혹은 교사가 가출 청소년이 가정에서부터 받는 학대와 폭력을 파악했다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성매매 행위의 첫 단추인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해야 한다.

2019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 릴레이 포럼

토 론 2

심의 시스템을 활용한 채팅 앱 유해성 관리

김준교(방송통심의위원회 청소년보호팀 차장)

발제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본 발표자료는 인쇄하지 않습니다.

발제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본 발표자료는 인쇄하지 않습니다.

2019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 릴레이 포럼

토 론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채팅 앱 유해성 관리

김수연(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전담 변호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채팅 앱의 법률적 검토

김수연 변호사

Ⅰ. 불특정인 대상 채팅 앱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

○ 채팅 앱을 통하여 발생하는 청소년 대상 범죄

- 청소년의 채팅 앱 이용률 증가, 유해정보 노출, 성착취 범죄 발생
- 관련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

○ 채팅 앱 운영방식의 다각화

- 효율적인 관리·감독 가능성의 문제
-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규제 필요

○ 민간(사업자)자율규제의 한계

-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음
- 청소년보호정책(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성매매경고문구 게시의 실효성
- 개발자·운영자 입장 : 법적 근거 미비, 규제완화 추세, 글로벌 기준

○ 행정적 제재의 한계

- 효과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불가 입장(방심위)

○ 법적, 정책적 논의 모두 공전되고 있는 실정

- 법률개정안 계류 : 각 부처의 반대의견, 법률안 자체에 대한 문제
- 수정안·대안 마련이 요구되나 답보상태
- 관련 정책 시행에 대한 공감 부족

Ⅱ. 불특정인 대상 채팅 앱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

○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9조)
> 2. 개별 심의 기준
>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것

- 단계적 구분*하여 개별고시/ 랜덤채팅 앱에 대한 특정고시 검토

○ 채팅 앱 운영자에 대한 책임 근거 마련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채팅 앱 사업자에 대한 신고, 등록 의무 부과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소규모부가통신사업자 중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는 신고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대화저장 및 신고, 수사기관에 정보 제공)

- 정보통신망법 개정 (불법정보 유통금지)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규정 신설

>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에게 성매매 알선 등 정보 발견을 위한 조치 및 해당정보 발견 시 전송방지 등과 같은 기술적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수사기관 신고 및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 벌칙·과태료 규정 도입, 범죄 수익 환수(추징)

○ 성인인증, 본인인증 절차 및 등급제 등의 도입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본인인증절차와 유사한 취지
- 매체물 등급 제도

○ 현행법 집행

-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제17조
- 정보통신망법, 성매매처벌법, 청소년보호법

Ⅲ. 법 개정 관련 현황 및 향후 법적 과제

○ 관련 법률개정안의 문제

- 성매매경고문구 게시

>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3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대화화면에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디지털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여 성매매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
>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하는 디지털콘텐츠에 인터넷서비스의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성매매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청소년 등을 성매매범죄로부터 보호하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 불특정인 대상 채팅 앱 자체에 대한 유해성 논의

○ 현행법 적용 강화, 관련 규정(청소년성보호법) 개정

- 온라인 그루밍 수사 및 처벌 확대, 대상청소년규정 삭제 등

○ 전담기구(T/F) 구성

- 부처별 대책검토 및 관계기관 내부 회의의 한계
-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통합적 차원의 논의 필요

2019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 릴레이 포럼

토 론 4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인인증 필요성

장 근 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채팅 앱 청소년보호 가이드라인에 관해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진석 부장께서는 랜덤채팅앱의 현황에 대한 치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조건만남 등 청소년들이 이 플랫폼에서 성적으로 착취당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상세히 살펴보고, 각각의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PC통신 시절부터 지금까지 불특정 상대방과의 채팅의 경험이 없었던 토론자는 이 주제의 토론에는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다행히도 토론자에게 이 보고서는 토론을 위한 자료이기 이전에 랜덤채팅을 이해하는 매우 훌륭한 가이드북이었다. 유감스럽게도 이 보고서를 읽은 지금에 와서도 나는 랜덤채팅 사용자들의 심리를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자기를 노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하지만 바로 그런 요소가 랜덤채팅의 매력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서 랜덤채팅 이용의 동기와 랜덤채팅 앱의 위험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발제자는 랜덤채팅 앱의 이용이 개인주의적 사회, 이웃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알아가는 것에 한계를 느끼는 현세대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라고 지적했는데, 어느 정도 동의한다. 하지만 개인화된 사회의 필연적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픈 욕구뿐만 아니라, 의외성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익명성에 바탕해 솔직한 표현기회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 역시 랜덤채팅을 이용하는 이유일 것이다. 의외성은 랜덤이라는 요소의 핵심이며, 익명성은 상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를 지키는 수단이기도 하다. 즉, 랜덤 채팅앱의 문제적인 요소라 지적된 익명성, 사적대화공간, 대화내용의 휘발성이 모두 이 공간의 매력인 것이다.

이런 경우, 위의 요소들을 규제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된다. 발제자는 ‘악의적인 사용자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회원관리를 하지 않는 앱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도록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부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취지는 100% 동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채팅 앱 사업자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앱 운영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다면, 그 규제는 기대

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역시 가능하다.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지인 기반의 메신저 외에 익명의 상대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채팅 앱에 대해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면(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이 현재의 랜덤채팅 앱과 유사한 새로운 소통창구를 찾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서는 실제로 법적인 규제나 단속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활동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음지로 흘러들어가게 만들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발제자는 채팅 앱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위해사건들에 대해 앱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용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도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용자를 쫓아 다니며 단속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는 사실 역시 인정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가 이 문제를 이해하는 하나의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2000년대 이전까지는 개발도상국의 범주 안에 있었다. 하지만 2019년 현재, 소득수준과 인구 및 경제규모 지표에 따르면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며 선진국의 일원이다. 선진국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아니다. 개도국과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를 관리해야 하는 나라다.

아래 표로 요약한 바와 같이, 개도국은 구성원들의 교육수준이 높지 않고 개인으로서의 자의식 보다는 집단정체성에 의존한다. 공적인 신뢰수준이 낮기에 사적인 신뢰에 의존해서 공동체가 구성되며, 따라서 사적인 관계의 영향력이 지배적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정책실효성이나 거버넌스가 낮을 수밖에 없다. 단, 사회의 복잡도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특정 영역을 대상으로 거버넌스를 집중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법령도 강제적인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모든 사례를 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에 '일벌백계'를 추구하는 경직되고 가혹한 처벌 중심의 규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청소년의 지위 역시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하기보다는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이 중심이 되며, 당연히 훈육과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반면에 선진국은 사회의 복잡도가 높고, 구성원들의 개인의식도 높다. 공적인 신뢰가 어느 수준 이상이기에 정부의 거버넌스가 광범위하게 유효하지만, 복잡한 이해 주체들 간의 관계를 고려해 유연한 자율규제를 도입한다. 강제적 규제는 최소한의 영역으로 제한하되, 예외 없이 적용한다. 또한 청소년들을 학생이 아니라 동등한 구성원으로 간주하고 보호의 관점이 아니라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행하고 갈수록 더 많은 참여의 권리를 인정하는 추세다.

이와 같은 양상을 채팅 앱 규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도국	선진국
신뢰수준	공적 신뢰 낮음 사적 신뢰에 의존	공적/사적 신뢰 중간이상
관계의 속성	사적 관계 중심	공적/사적 관계 공존
거버넌스	낮음	높음
사회 복잡도	낮음	높음
구성원 자의식	개인의 자의식 낮음 집단심리, 집단정체성	개인 자의식 높음 권리와 책임의식 균형
규제법령	강제적 규제 중심 경직되고 가혹함	강제적 규제 / 자율적 규제의 균형적 배분
청소년의 지위	학생으로서의 청소년 훈육과 보호의 대상	동등한 구성원 권리보장, 참여권 확대

표 60. 개도국과 선진국의 규제환경 비교

채팅 앱 플랫폼 개발자,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정보기술의 발전보다 청소년보호가 우선이라는 원칙도 당연하다. 하지만 플랫폼 운영자가 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은 자율규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랜덤채팅이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에 기반하는 한, 이 활동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될 것이다. 명백한 수요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강제적인 규제는 느리고 경직되기 마련이며, 결과적으로 그 규제를 회피하는 새로운 BM을 만들어내는 등의 방식으로 유효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채팅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구체적인 특정 요소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이 시장과 생태계 전반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목표로 해야 한다. 이것이 이 영역에 대한 자율규제가 가장 적절한 방법인 이유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의 적용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플랫폼 사업은 그 플랫폼 업계 내부자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요소의 출현이나 전개 양상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다. 문제는 자율규제 역시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자율규제가 구현되려면 업계를 조직화하여 대표성을 구현하고, 이 대표성을 가진 곳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단계적 진행이 필요하다.

메 모

메 모

2019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릴레이 포럼

랜덤채팅 앱과 청소년 보호방안

발 행 일	2019년 11월 27일 인쇄/발행
발 행 인	최 영 희
발 행 처	(사)탁틴내일
주 소	(03175)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 내일신문빌딩 지하2층
연 락 처	02-338-7480
팩 스	02-3141-9339
홈페이지	www.tacteen.net
디자인/인쇄	타라그래픽스